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17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증진 방안 연구

(A Study of Policy Reform Plan for Protection
and Right Enhancement of Child·Youth
against Illegal·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최경진/황창근/정경오

2020. 12.

연구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문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1절 과제의 필요성	1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	27
제 2 절 연구목표	29
제 2 장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최근 국내 입법 동향 분석	30
제 1 절 정보통신망법	30
1. 불법촬영물등 유통장비 책임자 지정 등(법률 제17358호, 2020. 6. 9. 개정, 2020.12.10. 시행) 30	
2.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32	
제 2 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 도입 등(법률 제17338호, 2020. 6. 2 개정, 2020. 6. 2 시행) 33	
제 3 절 전기통신사업법	38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대상 확대 등(법률 제17532호, 2020. 6. 9 개정, 2020. 12.10. 시행) 38	
제 4 절 제21대 국회 제출 법률안	4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9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3
제 3 장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국외 법제 현황 · 102	
제 1 절 미국	102

1. 개요	102
2. 행정기관: 법무부 아동착취음란물과 (U.S. Department of Justice Child Exploitation And Obscenity Section)	103
3. 구체적인 규정	104
제 2 절 유럽연합	118
1. 개요	118
2. 회원국의 입법 현황	119
3. 아동 성적학대에 관한 지침 (Child Sexual Abuse Directive, 2011/93/EU)	120
4.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인터넷을 위한 유럽 전략	123
5. 자율 규제	125
제 3 절 일본	129
1. 개요	129
2. 아동 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兒童買春、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護等に關する法律)	129
3.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	131
제 4 절 영국	133
1. 개요	133
2.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133
3.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 2003)」	135
4.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136
5.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136
6. 자율규제 등	137
제 5 절 독일	139
1. 개요	139
2. 형법	139
3.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	140
4. 「인터넷접근제한법(Zugangsschwerungsgesetz, ZugErschwG)」 - 폐지	141

5.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141
6. 「미디어 주간 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	142
제 6 절 호주	144
1. 「온라인안전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144
2.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률 (Comba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개정)」	144
3.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	146
4. 뉴사우스웨일즈의 아동보호자법(Children’s Guardian Act 2019, No.25)	147
제 7 절 캐나다	148
1. 「형법전」 제163.1조제(3)항	149
2. 「지역사회와 착취 피해자 보호법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150
3. 그 외	150
제 4 장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 방안	153
제 1 절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53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153
2.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66
제 2 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172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방안	172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183
제 3 절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86
1.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186
2. 지침의 입법화 가능성	188
제 4 절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97
1.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197
2.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	200
3.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해 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다각적 검토	202
제 5 절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증장기 로드맵 도출 및 타 기관 협조 요청 사항	204
1. 증장기 로드맵 도출	204
2. 타 기관 협조 또는 요청 사항	205
제 5 장 결론	28
참고문헌	210

표 목 차

<표 1-1> 랜덤채팅 A의 회원 가입 현황	7
<표 1-2> 중·고등학생의 불법 스포츠도박 경험 실태	2
<표 1-3>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 방법(중복응답)	2· 2
<표 2-1> 현행·개정안 비교표	3
<표 2-2> 현행·개정안 비교표	3
<표 2-3> 개정 전·후 비교표	4
<표 2-4> 개정 전·후 비교표	4
<표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9 4
<표 2-6> 현행·개정안 비교표	3
<표 2-7> 현행·개정안 비교표	5
<표 2-8> 현행·개정안 비교표	6
<표 2-9> 현행·개정안 비교표	8
<표 2-10> 현행·개정안 비교표	6
<표 2-11>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표 2-12> 현행·개정안 비교표	6
<표 2-13> 위장수사 입법안 비교	2 7
<표 2-14> 현행·개정안 비교표	4
<표 2-15> 현행·개정안 비교표	5
<표 2-16> 현행·개정안 비교표	7
<표 2-17> 현행·개정안 비교표	8
<표 2-18> 제21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8
<표 2-19> 현행·개정안 비교표	8

<표 2-20> 현행·개정안 비교표	9
<표 2-21> 제20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9
<표 3-1>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규제 - 특정 기능 제공 금지	41
<표 3-2> 미성년자 근로 가능 시간 기준	51
<표 3-3>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2019) 주요내용	54
<표 4-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비교	71
<표 4-2>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한 개정안	81
<표 4-3> 청소년보호법상 등급 구분	91
<표 4-4> 등급표시에 관한 개정안	91
<표 4-5> 신고포상제에서 신고 사유	111
<표 4-6> 청소년보호법상 신고포상제	121
<표 4-7> 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포상제	121
<표 4-8> 신고포상제 비교	121
<표 4-9> 정보통신망법령상 신고포상제 근거	141
<표 4-10>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법적 근거	161
<표 4-1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경고 문구 법적 근거	171
<표 4-12> 긴급지원절차 법적 근거	171
<표 4-1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71
<표 4-14> 개정안	171
<표 4-15> 개정안	171
<표 4-16> 현행·개정안 비교표	181
<표 4-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1
<표 4-1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41
<표 4-19>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주요내용	271
<표 4-20> 아동·청소년 출연 관련 계약체결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개정안	291
<표 4-21> 출연료 등 대가청구에 관한 개정안	301
<표 4-22> 금지행위에 관한 개정안	311
<표 4-23> 청소년의 삭제 요구 등에 관한 개정안	321

<표 4-2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정안	12
<표 4-25> 개정안	12
<표 4-26> 개정안	12
<표 4-27>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보호 로드맵	24
<표 4-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32
<표 4-2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2

그 립 목 차

[그림 1-1] 불법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2
[그림 1-2] 불법정보 유형별 심각성	2
[그림 1-3] 청소년 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4
[그림 1-4] 아동청소년 음란물 접촉 경험	5
[그림 1-5] 아동청소년 음란물 이용 장소	6
[그림 1-6] 청소년 성매매 경로	9
[그림 1-7] 모바일 및 어플로 성매매를 할 경우 본인인증 여부	01
[그림 1-8] 피해촬영물 유형	21
[그림 1-9] 채팅어플 사용 목적	31
[그림 1-10] 성매수 시도자들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반응	41
[그림 1-11]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평균 나이 및 직업	41
[그림 1-1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 유형	51
[그림 1-13] 몸캠피싱 범죄 수	71
[그림 3-1]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WeProtect Global Alliance 모델	8·2·1
[그림 3-2] 일부 국가의 국가법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법적 제재 관련 평가 결과 ...	151
[그림 4-1] 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 서비스 구성	5
[그림 4-2]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5
[그림 4-3] 인터넷접속방법	5
[그림 4-4] 이동통신불공정행위 신고처리 절차	6

요 약 문

1. 제 목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 분석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분석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국내의 법제 현황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
-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 방안 도출

○ (필요성)

-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노출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및 온라인 성매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응 필요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에 대한 학대논란 등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성도 증가
- 최근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청소년 관련 문제 발생
- 청소년이 불법·유해 정보에 이용되어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인적 역량 약화

-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과거 세대와 다르게 아동·청소년의 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활동도 온라인과 연계된 인터넷 융합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아동·청소년은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높고, 인터넷 친밀도 또한 높음
 -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고도정보화의 인적·사회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한 방안 정립 필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호방안 수립 필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및 인터넷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필요
 -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개정 필요
- 국민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과 뒷받침이 필요함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 분석
 -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피해현황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실태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등 불법행위 실태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논란 등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피해 실태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분석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 미국, 일본, 독일, EU, 호주, 캐나다, 영국 등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방송통신심의 제도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다수 규제기관 간의 관계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다수 법률의 충돌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 제도의 한계 이관하는 문제 논의 필요
-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 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자율규제 민관 협력방안, 고지의무 도입,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개선, 유통방지 책임자의 직위 의무화,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 개선, 온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등의 가중처벌,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아동·청소년 출연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청소년의 잊힐 권리 명문화, 아동·청소년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함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대한 중요한 사항 설명 의무, 서면계약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

업자 등의 금지행위, 휴식권 보장, 아동·청소년이 출연료 등 대가의 직접 청구권 인정 등은 상항 입법화를 하는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및 성착취물 배포·유포 등의 경우 불법행위 또는 형사 처벌 등 엄단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경고 문구 등을 게재하는 것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으로 검토함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적인 자율등급표시제를 의무화하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시 차단수단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컴퓨터 제조사에게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규제 및 민관협력 강화방안으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포상제를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여 현재 행위자기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포상을 하는 것을 행정법 위반의 경우에도 신고포상을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비공개 대화방 등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불법행위의 엄단을 경고·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4에 신설

○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 지침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일반원칙), 제5조(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제6조(인터넷개인방송 콘

텐츠 제작과정), 제7조(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의무) 등 7개조로 구성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의 입법화 가능성

· 프랑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6월30일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의 입법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의 입법화 가능성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에 따른 설명의무, 계약서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출연료 등 대가 청구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직접 청구권 인정,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촬영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한 휴식이나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허위 또는 부실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써 과태료 신설이 필요하고,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 개선 사항으로는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의무 내용의 구체화, 그에 따라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함.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웹사이트, 게시판 등 설치, 운영의 금지 신설하였고, 온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검토.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유통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다만 일부 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의 타 기관 소관 법률로 개정 요청 또는 업무 협조사항에 해당됨

5. 정책적 활용 내용

-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여,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6. 기대효과

-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실질적인 구제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SUMMARY

1. Title

A study of policy reform plan for protection and right enhancement of child·youth against illegal·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2. Objective and necessity of Research

○ (Purpose)

-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damage to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Analysis of policies related to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Research of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Examination of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Derivation of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promote their rights and interests

○ (necessity)

- Necessity of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gainst violence, distribution of pornography which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used therein
- Necessity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 Necessity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through the secrete SNS communication like Telegram
 - Necessity to establish a human, soci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ustainable high-level informatization for national interest and protection of youth who will lead the futur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Necessit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Korea's future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damage law to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Analysis of policies related to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Analysis of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 Policy reform plan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measures to promote rights and interests

4. Research Results

-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 Self-regulated public-private cooperation plan
 - Introduc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 Improvement of the obligation to submit a transparency report
 - Improvement of child protection in interact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 Introduc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to prevent crimes such as pornography which children and youth are used therei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 System improvement plan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 Obligation to conclude a contract with children·youth
 - Obligation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to children, youth and guardians when appearing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 In order to effectively remedy children and youth from damages by illegal or harmful contents on the Internet,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re proposed to guarantee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re proposed. This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legislation.
-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 mid- to long-term roadmap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nd promo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was derived, and policy tasks and legislative tasks to be pursued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were presented step by step. It can be used as basis for

policy reformation so that the government can systematically promote child and youth protection policies.

6. Expectat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and youth on the Internet, and contribute systematically to practical damage relief.

CONTENTS

- Chapter 1.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 Chapter 2. Analysis of recent domestic legislation trend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 Chapter 3.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 Chapter 4. Policy plan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from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measures to promote their rights and interests
- Chapter 5. Conclusion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1 절 과제의 필요성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가.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피해 상황

1) 불법유해정보 유통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첨단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보급 및 이용을 통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존 유해정보의 주범으로 꼽히던 웹하드를 통한 사진, 소설, 동영상 유통 뿐 아니라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서도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쉬워지고 있음

- 불법유해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 유통경로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그 생산과 확산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빨라져 확산 범위도 크게 늘어나 그 통제가 매우 어려워 졌음¹⁾

- 2018년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상반기 통신 심의·의결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시정을 요구한 불법유해정보는 119,665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41%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2008년 방심위가 설립된 후 가장 많은 수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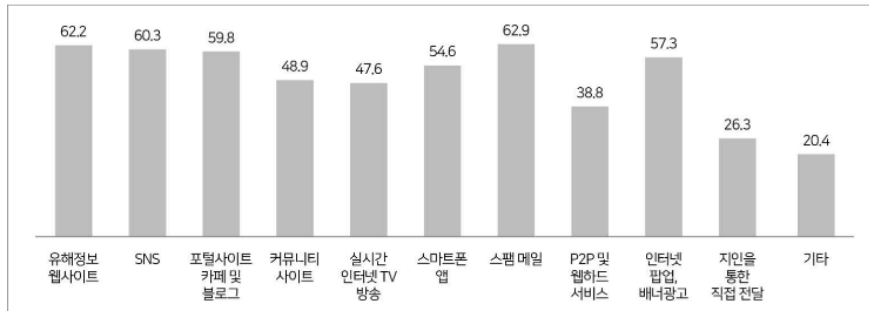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접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PC웹사이트 이용자의 3.5%, 모바일 웹사이트 10.3%,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3.2%의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음.²⁾

1) 김유향,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6, 12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2017, 21-41면.

- 접근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3.7%가 불법유해정보에 대체로 쉽게 또는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접근이 용이한 경로로 스팸메일(62.9%), 유해정보 웹사이트(62.2%), SNS(60.3%) 등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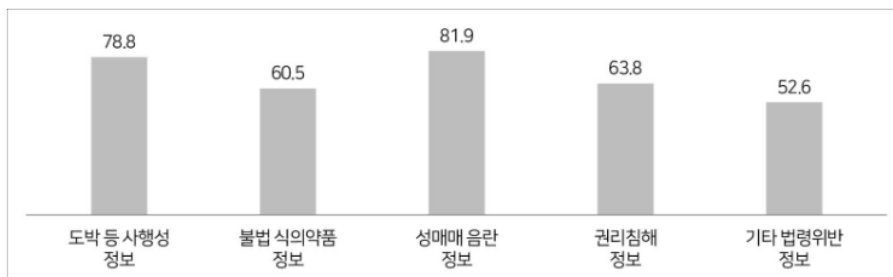
[그림 1-1] 불법정보 경로별 접근 용이성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2017, 재인용

- 성매매·음란 정보, 도박 등 사행성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권리침해 정보, 기타 법령위반 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형 중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불법 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2] 불법정보 유형별 심각성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2017, 재인용

2) 아동·청소년 불법유해정보 노출 실태

○ 청소년들의 불법유해정보 접촉현황은 성인들의 접촉현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

-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유해정보는 성적 호기심이 활발한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유해정보를 처음 경험하는 시기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쉽게 접하고 있음

- 특히 성의식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은 유해정보에 대한 판단 없이 놀이, 흥밋거리로 인식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돌려보기도 하고, 유해정보에 나온 행동을 모방하는 등 부정적 위험이 증가함³⁾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기준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남학생 48.7%, 여학생 29.4% 수준이고, 초등학교 5-6학년의 성인용 영상물 접촉률은 2014년 7.5%에서 2018년 17.7%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현재 청소년기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모바일 메신저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인데 최근 1년 간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메신저 89.8%,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은 88.1%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성인용 영상물의 주된 이용경로로 나타났음

○ 성인용 영상물 뿐 아니라 성인용 온라인 게임, 도박성 게임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유해매체가 성인인증 자체가 없거나 인증방식이 허술하여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임

- 유해매체를 이용할 때 성인인증을 거쳤는지 조사한 결과 성인용 온라인 게임은 76.1%, 도박성 게임은 56.3%,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앱의 경우에는 31.1%만이 나이를 확인했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유해매체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우려됨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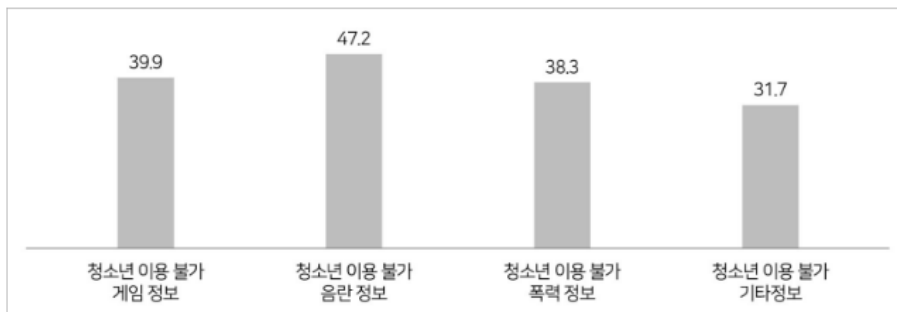
3) 김미선·박성수, '청소년의 음란물접촉과 예방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9권제1호 통권 제21호,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2면.

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8.

○ 방심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의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응답자(10-18세) 49.5%가 청소년 이용불가 음란정보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게임정보(39.9%), 폭력정보(39.3%)가 그 뒤를 따랐음

[그림 1-3] 청소년 유해정보 유형별 접촉 경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2017, 재인용

- 이용자는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의 이용실태가 84.2%로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도 70.3%의 응답자가 음란 정보의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실태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2조제4호)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5) 김미선·박성수, 위의 논문, 12면.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아동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경우 다른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그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오랫동안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피해가 예상됨

- 음란물에 출연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학대, 성도착 행위, 강간, 가학성 변태성욕, 아동에 대한 이상 성욕, 고문, 살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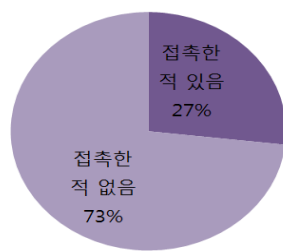
2) 유통 실태

○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유무를 확인한 결과 총 5000명 중 26.8%가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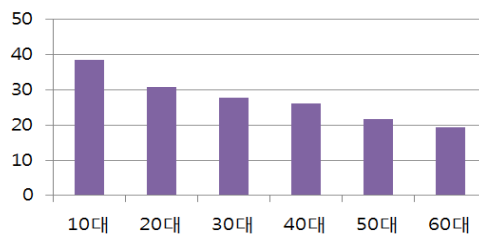
- 남성의 35.1%, 여성의 18.1%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접촉한 경험이 있고 연령별로는 10대의 38.5%, 20대의 30.9%, 30대의 27.9%, 40대의 26.1%, 50대의 21.8%, 60대의 19.4%가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경험



연령별 접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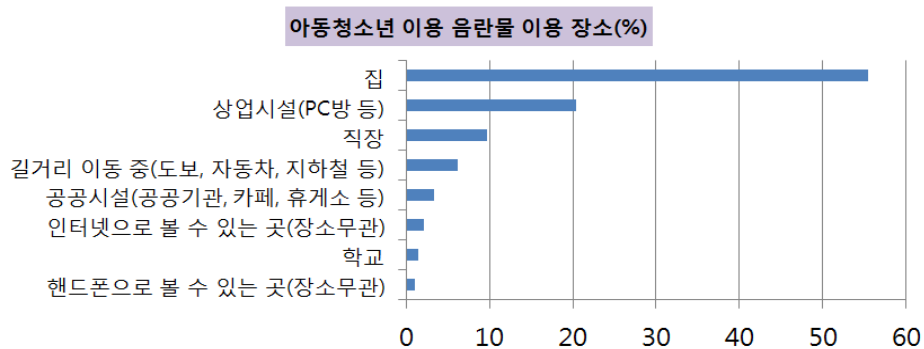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6) 강은영·김혜정·황태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49면.

2016, 재구성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집'이 55.5%로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PC방 등)'이 20.4%, '직장'이 9.7% 순으로 나타남, 3.3%의 응답자들은 장소와 무관하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곳 혹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본다고 응답하기도 함

[그림 1-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장소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2016, 재구성

○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여러 중대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음

- 가장 최근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4월 2일까지 밝혀진 피해자만해도 103명이었고 그중 1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가해자 중에도 10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⁷⁾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자체로도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7) 이관주,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만 103명...가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종합), 아시아경제, 2020.4.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214523822458>, 2020. 4. 10. 최종 확인

은 물론이고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성매매 등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매우 위험함,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 차단할 수 있는 법제개선이 요구됨

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등 불법행위 실태

1)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1)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 및 그 실태

○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동향분석」(2015.12.)에 따르면 성매매 경로 중 메신저·SNS·스마트폰 어플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47.1%, 성매매 알선 36.4%, 성매수가 46.1% 였으며 조건만남 사이트 및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한 일반사이트를 활용한 성범죄 순으로 나타남⁸⁾

<표 1-1> 랜덤채팅 A의 회원 가입 현황

2013. 5. 7. 기준 단위 : 명(%)

연령대 성 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상	합계
남	47,740 (5.5)	265,408 (30.5)	194,771 (22.4)	34,214 (3.9)	2,486 (0.3)	823 (0.1)	260 (0.0)	545,702 (62.8)
여	55,231 (6.4)	104,124 (12.0)	19,255 (2.2)	3,555 (0.4)	297 (0.0)	574 (0.1)	77 (0.0)	183,113 (21.1)
불상	129 (0.0)	61 (0.0)	122 (0.0)	76 (0.0)	25 (0.0)	2 (0.0)	140,363 (16.1)	140,778 (16.1)
합계	103,110 (11.9)	369,593 (42.5)	214,148 (24.6)	37,845 (4.4)	2,808 (0.3)	1,399 (0.2)	140,700 (16.2)	869,593 (100.0)
$\chi^2(p)$	961055.316($p < 0.001$)							

출처: 박광선,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표재인용

○ 2013. 05 기준 랜덤채팅 A의 가입자 수는 869,593명 중 10대 가입자는 103,110(11.9%)⁹⁾

8) 박찬걸,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02., 70면.

- 특히나 10대 여성과 성인 남성 사이에서 음란 사진 전송이 이뤄지는 비율이 낮지 않아 여성 청소년이 이런 랜덤채팅과 같은 어플을 통한 음란행위나 성매매에 무방비 노출될 가능성을 뒷받침 함¹⁰⁾

- 이렇듯, 성매매의 경로가 과거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고 IT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어플이 개발되며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 문화까지 활발해지면서 성매매의 유입경로가 대부분 온라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림

○ ‘연약하고 수동적인 성적 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는 어린 성매매 여성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성매매시장에 아동과 소녀의 공급 증가로 연결 됨¹¹⁾

- 최근에는 성매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기회주의적 구매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회주의적 구매자’란 상대의 나이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성매매 여성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함.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확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취함¹²⁾

○ 십대 여성인권 조진경 대표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범주가 넓혀져 비가출, 학교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설명¹³⁾

9) 박광선,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경찰학연구 제16권 제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6.12., 15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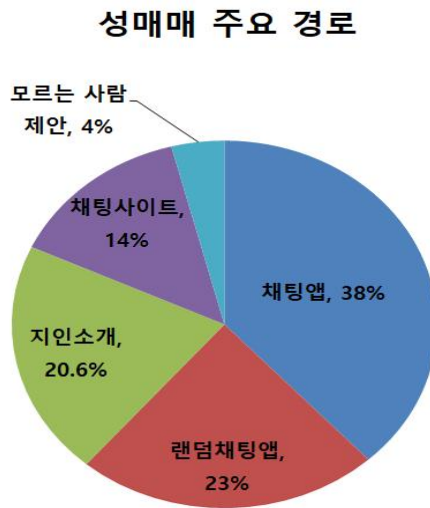
10) 연합뉴스, “‘음란물 천국’ 랜덤채팅 앱, 데이터 분석 결과가... 서울경찰청 박광선 경위 분석, 女청소년-성인 남성 접촉도 우려 수준”, 디지털타임스, 2017.0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802109954677008, 마지막방문일 2020.04.02.

11) 여성가족부,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매뉴얼 시리즈_6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2007.12., 19면

12) 여성가족부,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매뉴얼 시리즈_6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2007.12., 38면.

13) 전소영, “채팅앱으로 성매매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들... 피해 심각한데 관련법은 사각지대”, 투데이신문, 2019.10.16.,

[그림 1-6] 청소년 성매매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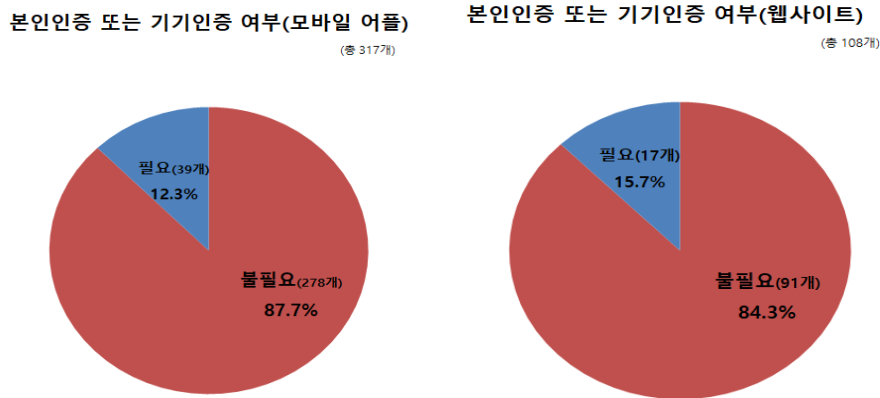


출처: 본 그래프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7명에 해당하는 수치인 74.8%가 채팅어플이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상대를 만남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97>, 마지막방문일 2020.04.01.

[그림 1-7] 모바일 및 어플로 성매매를 할 경우 본인인증 여부



출처: 본 그래프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 모바일 웹사이트 및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 중 조사대상에 속하는 성매매 조장 모바일 앱의 경우 317개 중 278개(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도 사용이 가능했으며, 게다가 어플 개발자가 제시한 본 어플 사용 가능 연령은 무려 210개(66.2%)에서 17세로 설정되어 있었음

-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중 성인인증을 요구한 곳은 15.7% 불과, 즉 84.3%는 성인인증이 없이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 여성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최초 성매매 경험 연령 중 10대라고 답한 응답이 21.8%로 5명 중 1명은 청소년 시절 성매매를 경험 한 것으로 드러남

○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사전지식 없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채팅앱들은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왜냐하면 회원가입 시 별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닉네임, 성별, 나이, 지역만 설정하면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¹⁴⁾

- 구글플레이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별도 제공하는 APK를 설치하면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애플앱스토어는 별도 성인인증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14) 이현수, “성매매 온상이 된 ‘채팅앱’...성인인증 절차 없어 청소년도 악용”, 전자뉴스, 2019.05.22., <https://www.etnews.com/20190522000191>, 마지막방문일 2020. 04. 01.

- 게다가 이러한 채팅앱들은 번호 공유는 하지 않고 대화내용도 저장되지 않으며 게다가 캡처 기능도 제한되어 있어 성매매, 조건만남에 유용함

- 표면적으로는 '친구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채팅앱에는 조건만남 혹은 성매매를 지칭하는 약어들이 넘치며 미성년을 뜻하는 '1-'로 프로필을 작성했다니 1시간도 안되어 10개가 넘는 쪽지가 오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위주로 업소형 성매매가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모바일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 수범중 하나인 그루밍은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한 뒤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하는 악랄한 방법인데,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말함¹⁵⁾

- 성인의 '그루밍'을 '돌봄'으로 인식하여 성매매를 지속하거나 '애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¹⁶⁾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 2014년 390명에서 2017년 637명으로 급증¹⁷⁾

- 문제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추적조사가 불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한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는 771명에 이룸

-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채팅앱과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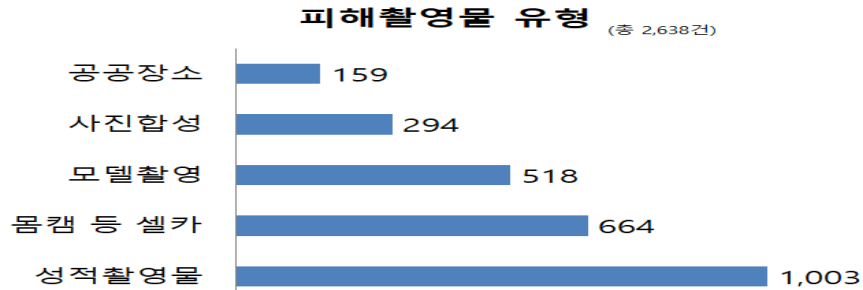
15) 하혜빈, "그루밍→협박→성착취 영상...악랄한 'n번방'수법", JTBC, 2020.03.2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2165, 마지막방문일 2020.04.02

16) 구차순·김현옥,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과 지속배경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11., 105면.

17) 김훈기, "청소년 성매매 3년새 1.5배 증가...채팅앱·SNS' 범죄 온상", 중앙일보, 2018.09.14., <https://news.joins.com/article/22972107>, 마지막방문일 2020.04.02.

가 어려워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함

[그림 1-8] 피해촬영물 유형



출처: 본 그래프는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촬영물에 대한 10대 지원건수는 2,638건이며 SNS 이용률이 높은 10대에서 성적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¹⁸⁾

○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그 접근성이 용이해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고 검색하는 단어들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의 성매매 심각성이 우려되는 수준임.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을 수 밖에 없음¹⁹⁾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경로유형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조건만남 사이트 또는 장소는 2.3%로 나타남²⁰⁾

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인권 결과보고서, 21면, 20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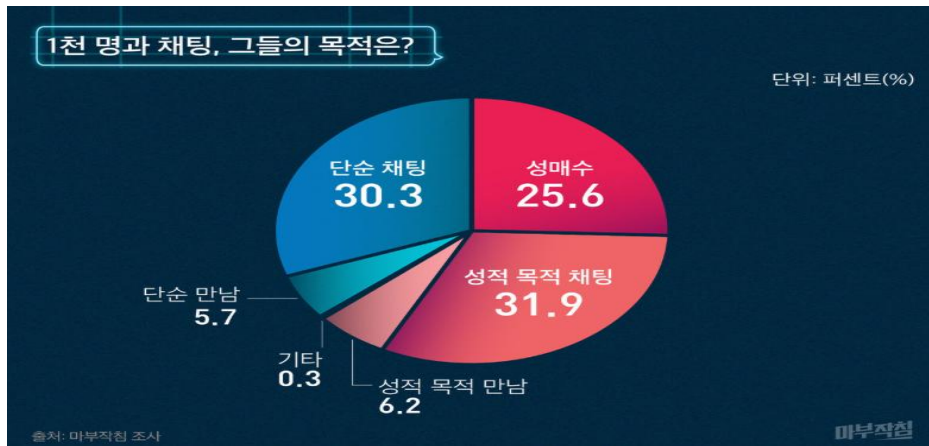
19) 유병돈, “딸이아 폰 보고 경악...SNS 성매매 무방비 노출된 청소년”, 아시아경제, 2019.12.02.,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0211424426527>, 마지막방문일 2020. 04. 02.

20)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경로유형 또한 메신저,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76.9%로 가장 높았음²¹⁾

○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팀은 '2018 성매매 리포트' 보도에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랜덤채팅앱' 온상을 취재²²⁾

[그림 1-9] 채팅어플 사용 목적



출처: 마부작침 조사

- 2017년 판결문의 통계적으로 청소년 성매수 피해자의 평균 연령인 16세(만15세)로 설정하고 채팅앱에 접속하여 1천여 명(1,034건)과 대화 시작, 10명중 6명은 성적 목적으로 접근

고서-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8.12., 136면.

21)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전계보고서, 147면.

22) 심영구,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청소년 성을 사는 ‘35세 한국남성’...왜 근절 되지 않나”, SBS 데이터저널리즘팀<마부작침>, 2019.06.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22364, 마지막방문일 2020.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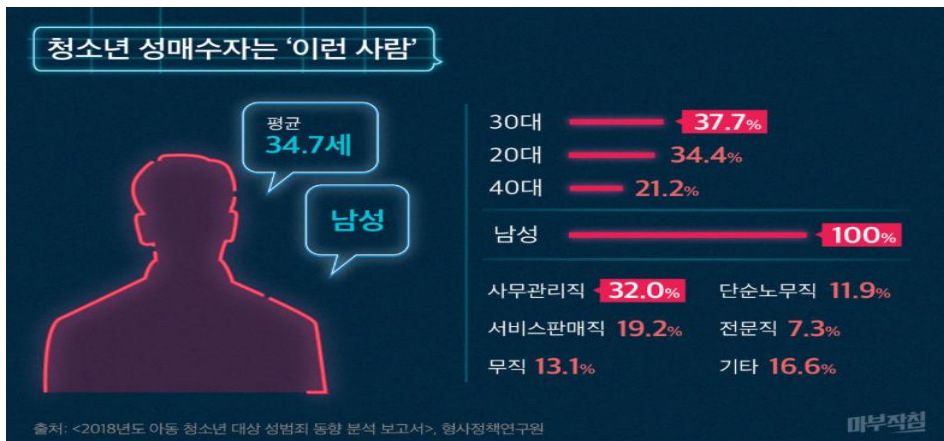
[그림 1-10] 성매수 시도자들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반응



출처: 마부작침 조사

- SBS 취재진이 채팅앱에서 대화한 1,034명 중 노골적 성매매 제안을 한 비율은 25.6%(265명). 이들은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80%(212명)가 상관없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 중 63.6%(135명)는 안하겠다고 대답하자 ‘돈을 더 주겠다’ 또는 ‘수위를 낮춰서 하겠다’며 회유

[그림 1-11]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평균 나이 및 직업



출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 형사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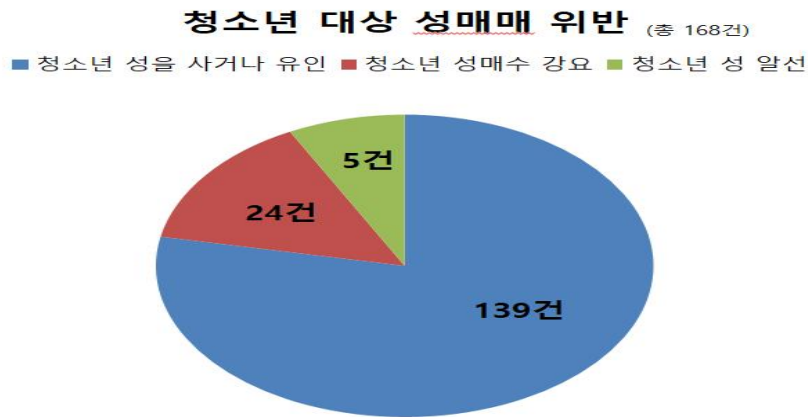
- 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채팅앱에서 성매수를 시도한 사람은 평균 34.7세의 한국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SBS 취재팀의 '1천여 명 채팅'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채팅앱에서 932명만이 자신의 성별과 나이를 프로필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 정보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채팅앱을 이용하는 참가자는 최소 17세부터 최고 65세까지 평균 연령은 29.6세

- 이러한 취재결과만 보더라도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가해 남성은 대부분은 성인 남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2) 성매매 범죄 유형

○ 2016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16.02.22~.05.31)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범 총 8,502명(1,972건)을 검거

[그림 1-1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 유형



출처: 본 그래프는 2016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위반사

범은 419명(168건)이며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 340명(139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 68명(24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 11명(5건)²³⁾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를 했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37.5%로 나타났고 2016년과 비교했을 때 30.1%에서 7.4%증가 함²⁴⁾

- 게다가 성매수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1회 이상 지속
적인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인인 경우 미상을 제외하고 1회에 그친 비율은 76.5%, 2회 9.5%, 3회 7.7%, 5회 이상
4.7%, 4회가 1.6% 순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²⁵⁾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례

○ 15세 한모양은 가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성매매 알선을 하던 28세 박모씨를
만나면서 채팅 앱을 통한 조건 만남을 통해 돈을 챙겼고, 2015년 3월 26일 성구매자 김씨는
한모양을 마취제로 잠들게 한 후 목졸라 살해, 성매매 대금으로 한모양에게 썼던 13만원
과 스마트폰을 뺏어 달아남. 후에 경찰에 체포된 뒤 밝혀진 김씨의 정체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나는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관계를 가진 후 흥기 등으로 위협해 도로 지불했던 돈
을 다시 빼앗아가는 ‘채팅앱 성매매 사냥꾼’으로 드러남²⁶⁾

○ 2016년에는 7세지능을 가진 만13세 지적장애 여아가 가출한 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 6명에게 일주일간 성폭행 당한 후 성매매에 이용된 일명 ‘하은이 사건’ 발

23) 여성가족부, “공연추천에서 사증발급까지 외국인연예인 보호 강화 - 제44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 中 < 채팅앱 악용 성매매 단속 강화 >”, 여성가족부
공식홈페이지 정책뉴스, 2016.06.27.,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3144, 마지막방
문일 2020.04.02.

24)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전계보고서, 14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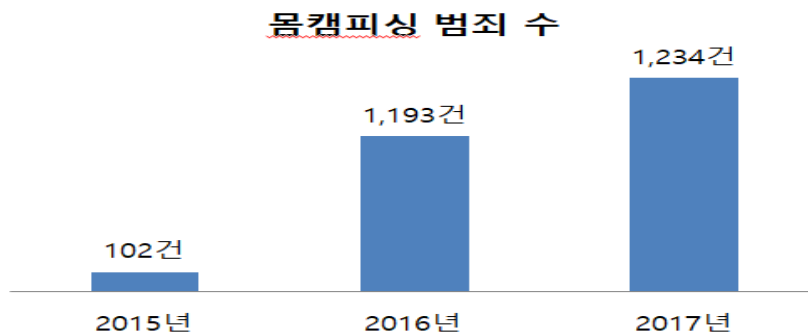
25)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전계보고서, 154면.

26) 정락인, “위험한 유혹, 가출소녀 노리는 채팅앱 성매매”, 시사저널, 2020.03.28.,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090>, 마지막방문일 2020.04.02.

생27)

(4) 온라인 성범죄 몸캠피싱

[그림 1-13] 몸캠피싱 범죄 수



출처: 본 그래프는 대검찰청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

○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 수가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영상을 확보한 뒤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심한 음란행위·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²⁷⁾

- 게다가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유도

-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하여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 취득하여 악

27) 김은정, “성매매의 뒷에 걸린 십 대 여성들을 위해-십대여성인권센터”, 2016.12.07., <http://www.cowalk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5272>, 마지막방문일 2020.04.02.

28) 채혜선, “아동·청소년 ‘몸캠 피싱’ 2년새 12배 급증...사전예방 방법은”, 중앙일보, 2018.07.08., <https://news.joins.com/article/22781985>, 마지막 방문일 2020.04.02

용하는 것으로 조사 됨²⁹⁾

○ 최근 모바일 보안업체 ‘시큐어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고 접수된 몸캠피싱 피해자 중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남³⁰⁾

–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경계심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심지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 알바’를 시키거나 해당 청소년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협박하는 범죄로 파생하기도 함

○ 영상채팅 등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은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는 상황³¹⁾

–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주변 시선이 무서워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중 40%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다"고 말함

29) 박진만, “홍분되는데 영상통화로’ 영혼까지 벗기는 몸캠피싱”, 한국일보, 2019.11.05.,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D%A5%EB%B6%84-%EB%90%98%EB%8A%94%EB%8D%B0-%EC%98%81%EC%83%81%ED%86%B5%ED%99%94%EB%A1%9C-%EC%98%81%ED%98%BC%EA%B9%8C%EC%A7%80-%EB%B2%97%EA%B8%B0%EB%8A%94-%EB%AA%B8%EC%BA%A0-%ED%94%BC%EC%8B%B1/ar-AAJQ08f>, 마지막 방문일 2020.04.02.

30) 강유라, “몸캠피싱 청소년 피해자 많아...보안 전문 ‘시큐어앱’, 몸캠피싱 관련 상담 24시간 진행”, 폴리뉴스, 2020.01.12., <https://www.polineews.co.kr/mobile/article.html?no=448477>, 마지막 방문일 2020.04.02.

31) 류용환, “청소년 4000명, ‘몸캠피싱’ 피해...여가부,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 2019.02.14.,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14/2019021400045.html>, 마지막 방문일 2020.04.02.

2)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성행

(1) 아동·청소년들의 온라인 사기피해

○ 최근 10대를 겨냥한 신종 금융사기가 등장함, 10대들의 소통창구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이용이 가장 활발한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토티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리입금’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천원에서부터 수 십 만원까지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갚을때는 비싼 이자가 붙어 그 금액이 불어나 ‘SNS사채’로 불림³²⁾

- 스마트폰을 생활화 된 아동·청소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0대들 사이에서 일명 ‘델입’이라고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 ‘SNS 대리입금’이 유행

- ‘SNS 대리입금’이 10대 사이에서 유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대리입금의 시작은 k-pop 팬 커뮤니티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 됨. 구입하고 싶은 게임 아이템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굿즈 등 서로 도와주는 의미의 일종의 품앗이 문화로 시작되었으나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

(2) 불법도박에 노출

○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또래 친구들, 선배, 특히 SNS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을 통한 도박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성이 심각해짐³³⁾

- 게다가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게임’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불법행위라고

32) 한승은, “10대 겨냥한 신종 금융사기 ‘SNS 대리입금’ 주의보”, 에듀진뉴스,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9>; 이사야, “대리입금 가능합니다...10대 겨냥 불법 대출 활개”, 국민일보, 2019.05.0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529&code=11131100>, 마지막방문일 2020.04.02.

33) 이미선, “청소년 불법 도박, 학교까지 파고들어”, 장성군민신문, 2019.11.05.,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82>, 마지막방문일 2020.04.02.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심리·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 도박’을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10대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 진입장벽이 낮고, 유입경로가 어플이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의 6.4%는 이미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고 2015년보다 증가된 수치로서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됨

- 청소년들은 PC(25.8%), 스마트폰(74.2%)으로 접속했다고 응답했으며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돈내기 게임 이용 접근성을 높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부추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청소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화두 된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불법토토(스포츠 도박)문제. 공식 토토 업체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미성년자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 청소년들은 불법 업체를 통해 도박을 하기 시작, 이것이 확대·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함

○ TV, 인터넷, 휴대폰 등의 매체 발달과 함께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포츠를 간접 참여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스포츠의 참여 중 하나인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공공재정 조달, 선수양성, 국민체육복지 기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³⁴⁾

-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공식 스포츠토토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 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불법 도박 사이트 판만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 버림.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고 적발에 어

34) 최원석·이혁기, “불법스포츠도박에 내재된 비합리적 도박신념 경험과 도박중독, 일탈행동, 학교생활 간의 인과모형-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체육교육학회, 2019.05., 50면.

려움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음

○ 불법 스포츠 도박 인지경로 및 이용수단(참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2> 중·고등학생의 불법 스포츠도박 경험 실태

특성	수준	빈도	%	특성	수준	빈도	%
최초 경험시기	중학교 1학년	2	8.0	1회 베팅액수	1만원 미만	8	32.0
	중학교 2학년	5	20.0		1-3원 미만	9	36.0
	중학교 3학년	4	16.0		3-7만원 미만	6	24.0
	고등학교 1학년	4	16.0		7-10만원 미만	2	8.0
	고등학교 2학년	7	28.0	최대 수익액수	1만원 이하	4	16.0
	고등학교 3학년	2	8.0		1-5만원 미만	9	36.0
기타	1	4.0	5-10만원 미만		2	8.0	
인지경로	주변사람(친구 등)	16	64.0	10-30만원 미만	3	12.0	
	광고	3	12.0	30만원 이상	7	28.0	
	인터넷	4	16.0	최대 손해액수	1만원 이하	10	40.0
	기타	2	8.0		1-5만원 미만	6	24.0
이용수단	인터넷사이트접속	16	64.0		5-10만원 미만	4	16.0
	휴대폰 어플	9	36.0		10-30만원 미만	3	12.0
인증여부	인증함	11	44.0	30만원 이상	2	8.0	
	인증안함	14	56.0	성공확률 인식	성공확률 0%	2	8.0
인증방법	본인자신	6	54.5		성공확률 25%	3	12.0
	부모	3	27.3		성공확률 50%	16	64.0
	형, 누나	1	9.1		성공확률 75%	4	16.0
	기타	1	9.1	도박자금 조달방법	용돈	18	72.0
월평균 이용횟수	6개월 1회 이하	19	76.0		아르바이트	4	16.0
	3개월 1회	1	4.0		친구에게 빌림	2	8.0
	한달 1-2회	2	8.0		기타	1	4.0
	주 1회	2	8.0	도박계속	예	3	12.0
	주 3회 이상	1	4.0		아니오	22	88.0
베팅종목	축구	6	37.5	도박계속	있는 돈 만회	2	66.7
	야구	1	6.3		이용이유	성공확률 확신	1
	농구	2	12.5				
	경륜	2	12.5				
	사다리	5	31.3				

출처: 김서연·오정수, 남자 중·고등학생의 불법 스포츠도박 실태조사, 표재인용

- 표에 따르면, 친구나 선배와 같은 주변사람들을 통한 경우가 64.3%, 이용수단은 인터넷 사이트 접속 64%, 휴대폰 어플 36%가 대부분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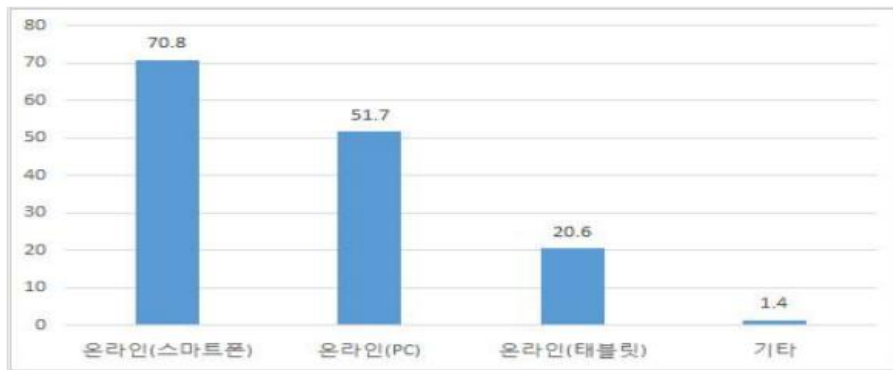
35) 김서연·오정수, “남자 중·고등학생의 불법 스포츠도박 실태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3호, 한국체육과학회 2017.06., 29면.

<표 1-3>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사례수	559	400	159	86	254	151	68	183	170	206
온라인(스마트폰)	70.8	71.8	68.6	75.6	76.0	66.2	55.9	73.8	68.2	70.4
온라인(PC)	51.7	53.5	47.2	45.3	49.6	58.3	52.9	44.3	54.1	56.3
온라인(태블릿)	20.6	18.5	25.8	22.1	22.0	20.5	13.2	22.4	25.9	14.6
기타	1.4	0.8	3.1	1.2	1.6	1.3	1.5	1.1	2.4	1.0

(단위: %)



출처 : 이연호·박영화·배영목·조택희,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실태와 결정요인, 표·그래프 재인용

- 위의 표와 그래프를 살펴보다라도 온라인(스마트폰) 비중이 70.8%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PC) 51.7%, 온라인(태블릿) 20.6% 순으로 나타남³⁶⁾

36) 이연호·박영화·배영목·조택희,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실태와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1호,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06., 83면

○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만 14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의 휴대 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게다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을 경우 거래도 가능하다보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투기가 이뤄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의 가상화폐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³⁷⁾

-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터치 몇 번으로 투자가 가능하니 간편”하다고 말하며, “24시간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밤새 확인한 적도 있다”고 말함.

- 미성년자들은 성인에 비해 자제력과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제적 자립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더 커지고 있음

- 이처럼 스마트폰과 어플이 발달하면서 그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지며,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화 된 청소년들의 비트코인 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논란 등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피해 실태

1) 인터넷개인방송의 발달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인터넷 개인방송의 주 이용자 계층 중 하나가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은 인터넷개인방송의 발달 이면에 감춰진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 개인방송을 제작·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요즘 그러한 문화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에 몰들어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거나 제작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³⁸⁾

○ 동영상플랫폼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개인채널을 만들어 동영상을

37) 이기욱, “비트코인·이더리움 위험한 투자 일삼는 청소년들”, 스카이데일리, 2017.11.20.,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498, 마지막방문일 2020.04.02.

38) 이두황·정연보·이상원,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12., 5면.

제작하고 방송을 하기 시작. 문제는 15세 미만인 키즈 유튜버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노동착취의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 보람튜브는 월 17억 이상을 버는 어린이 유튜브 채널인데, 20. 04. 02 기준 구독자가 2430만명에 이르는 인기유튜버, 그만큼 영상재생 수가 높아 수익이 많고 보람튜브의 운영자이자 ‘이보람’양의 가족들이 강남에 수십 억 대의 빌딩을 사면서 ‘아동 학대’ 및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가 대두 됨³⁹⁾

-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및 몇몇 채널 운영자들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시키고 이를 반복한 점을 볼 때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며 "또 이로써 광고수입을 챙긴 것은 아동착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⁴⁰⁾

- 한국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조약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9조 에서는 15세 미만은 노동할 수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13세 미만 아이들이 노동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취직인허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재학 중인 교육 기관의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 법제도가 아이들이 정식 일터가 아닌 집에서 영상을 찍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심지어 봄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키즈유튜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 그러므로 아동 노동법 집행에 관하여 근로 조건 및 노동 요건 구체화에 논의 필요

39) BBC 뉴스 코리아, “보람튜브: 키즈 유튜버는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아동학대 어떻게 예방할까?”, 2019.07.25., <https://www.bbc.com/korean/news-49067676>, 마지막방문일 2020.04.02.

40) 김설하, “보람튜브·뚜아뚜지TV...키즈 유튜버 잇따른 아동학대 논란”, MBN, 2019.07.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66065/>, 마지막방문일 2020.04.02.

2) 가학적 콘텐츠로 인한 아동학대 및 성착취 문제

(1) 정신적 충격 위험 노출 및 아동학대

○ 유아 혹은 어린이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에 참여하는 이도, 영상을 보는 이도 충분히 자극적일만한 설정이나 영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보람튜브에 '이보람'양을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하는 영상, 자동차를 이용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의 다리를 절단시키는 영상, 모기채로 아이를 겁박해 춤을 추게 하는 영상 등이 업로드 되어 논란이 됨, 2018년에는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 판결을 받음⁴¹⁾

- 뛰아뛰지TV는 6세 쌍둥이 여아 둘이 성인이 먹기 힘든 10kg 대왕문어를 자르지 않은 채, 먹는 장면을 업로드해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학적이고 아동학대로 보인다고 질타⁴²⁾

○ 구독자 약 12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키즈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로 공포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을 올렸는데, 아이가 미로 속을 헤매다 마주치는 귀신들을 보고 대성통곡 하는 등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끝까지 완료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여 아이가 공포에 질려하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문제제기 있었음⁴³⁾

○ 보람튜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기 키즈 유튜버 채널 '태희의 해피하우스'에서도 강도 분장을 하고 아이에게 겁을 주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올라옴

-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으로 유튜브에서는 콘텐츠 경고 부과나 채널 폐쇄 조치, 14세 미만 유튜버 혼자 생중계(방송)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⁴⁴⁾

41) 김선민, "보람튜브, '가학적 연출'로 혐오 논란?...네티즌 반응 엇갈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19072409305386897>, 마지막방문일 2020.04.02

42) 김설하, 전계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66065/>, 마지막방문일 2020.04.02.

43) 학준,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뉴스핌, 2019.08.0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807000366>, 마지막방문일 2020.04.02

44) BBC 뉴스 코리아, 전계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49067676>, 마지막방문일 2020.04.02.

(2) 청소년 성착취 및 성희롱 문제

○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한 혐의로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음⁴⁵⁾

- 편의점 앞에서 B양 등 16세 청소년 2명을 발견하고 노래방비, 식사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노래방으로 B양을 유인 함. 그 후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미션'을 수행하며 B양 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방송했으며 이어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간 뒤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노출하는 등의 영상을 계속 송출함

○ 아프리카 TV등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청소년BJ들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별풍선'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행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채팅앱을 넘어 영상 채팅, 개인 방송을 통해 성구매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⁴⁶⁾

○ 기획사 대표라고 속여 10대 청소년 3명을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방송을 한 30대 식당중업원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358

- 이씨는 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화상 캠코더 등으로 18살 미만 등을 BJ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함, 개인방송 워크TV에서 본인이 고용한 미성년자 BJ들의 신체를 노출시키고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 참여자(시청자)들에게 '습사탕'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캐시를 받음

○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을 인터넷 방송⁴⁷⁾

45) 허광무, “청소년 출연시켜 음란방송한 50대 BJ...징역 2년6개월”, 연합뉴스TV, 2019.12.30.,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141400057>, 마지막 방문일 2020.04.02

46) 이세아, “청소년 성착취 온상 된 채팅앱·개인방송”, 여성신문, 2018.08.30.,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6> 마지막방문일 2020.04.02.

- 20대 오모씨는 18세 A양과 2대1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그대로 20여분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를 통해 송출하였고 그 출연 대가로 A양에게 50만원을 지급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리카TV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아동BJ에게 ‘바지를 벗으면 별풍선 500개(아프리카TV 내에서의 현금 가치가 있는 단위)’, ‘브래지어(속옷)을 보여주면 별풍을 쏘겠다.’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들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 강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도록 권고한 바 있음⁴⁷⁾

- 덧붙여 방심위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로 인터넷 방송이 중요한 콘텐츠로 성장한 만큼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실시간 영상 촬영 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적발언 혹은 인격 모독적 발언을 바로바로 제재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 됨

2. 본 과제의 수행필요성

○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청소년 관련 문제 발생

○ 청소년이 불법·유해 정보에 이용되어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47) 이홍석, “미성년자 출연시켜 변태성행위 20대 BJ 2명 검거”, 신아일보, 2015.12.30.,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530>, 마지막방문일 2020.04.02.

48) 강영수, “아동BJ 인터넷 방송서 "바지 벗으면 별풍 쏜다" 성희롱 댓글 이용자 영구정지”, 조선비즈, 2016.03.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0/2016031002407.html, 마지막방문일 2020.04.02.

인적 역량 약화

○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 과거 세대와 다르게 아동·청소년의 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활동도 온라인과 연계된 인터넷 융합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아동·청소년은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높고, 인터넷 친밀도 또한 높음

○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고도정보화의 인적·사회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한 방안 정립 필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호방안 수립 필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및 인터넷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필요

-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개정 필요

○ 국민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의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과 뒷받침이 필요함

제 2 절 연구목표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 분석
 -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피해현황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실태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등 불법행위 실태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논란 등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피해 실태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정책 분석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 미국, 일본, 독일, EU, 호주, 캐나다, 영국 등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방송통신심의 제도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다수 규제기관 간의 관계
 -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다수 법률의 충돌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 제도의 한계 청소년유해정보 규제를 유지할지 여부 재검토

-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 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 2 장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최근 국내 입법 동향 분석

제 1 절 정보통신망법

1. 불법촬영물등 유통장비 책임자 지정 등(법률 제17358호, 2020. 6. 9. 개정, 2020.12.10. 시행)

가. 개정 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입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됨(제22조의5, 제22조의6).

나.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제44조의9)

-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제1항).

불법촬영물이라 함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

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말함

－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함

－ 제3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76조제2항 4호의4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제64조의5)

－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투명성보고서에는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76조 제3항 제25호 :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가.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4조의8).

제 2 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념 도입 등(법률 제17338호, 2020. 6. 2. 개정, 2020. 6. 2. 시행)

가. 개정 이유

이 개정법률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되어 20대국회 중반기인 2020. 5. 20.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 22. 정부로 이송되어 6. 2.자로 공포되었는데, 본회의의결과 법률 공포 중간에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입법된 것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관련된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정비함

<표 2-1>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_____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_____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_____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_____ -----소지·운반·광고·소개----- _____3년 이상의_____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_____3년 이상의 징역에-----.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_____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_____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생략)

<신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⑥ (현행과 같음)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② 아동·청소년성

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2. (생략)

② ~ ⑧ (생략)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취업제한 명령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 경우

1. ~ 2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포상금) ①-----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은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적인 성착취형 범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것이고,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전통적인 성범죄 체계에 따른 음란물이라는 규범적 평가 및 보호법익을 사회적 법익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음. 따라서 사회적 법익인 음란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피해자 중심의 개인적 법익 보호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법익에서 개인적 법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임⁴⁹⁾

49) 윤덕경(2020.5),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KWDI Brief 제5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면.

제 3 절 전기통신사업법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대상 확대 등(법률 제17532호, 2020. 6.9. 개정, 2020. 12.10. 시행)

가. 개정 이유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표 2-2>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_____(이하 _____제2조제4호가목_____.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	③ _____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가목_____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_____

-----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6에서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 삭제 접속차단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신 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및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3의2. (생략)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의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징수 및 환금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_____.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신 설>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신 설>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_____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 한 다)

_____.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생 략)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1. _____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 _____

제65조의2(벌칙) _____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7. ~ 8. (생략)

9.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96조(벌칙) _____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제4항 본문 _____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제22조의3제1항 _____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p><신 설></p> <p>2.·3. (생 략)</p> <p>④ (생 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2. (생 략)</p> <p>2의2.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3. ~ 17. (생 략)</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p>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p> <p>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2.·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_____ -----.</p> <p>1.·2. (현행과 같음)</p> <p>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 _____ -----</p> <p>3. ~ 17. (현행과 같음)</p> <p>⑥ _____ _____. — 제항각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p> <p><삭 제></p> <p>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_____ _____ 2022년 9월 22일 _____ --.</p>
---------------------------------------------------------------------------------------------------------------------------------------------------------------------------------------------------------------------------------------------------------------------------------------------------------------------------------------------------------------------------------------------------------------------------------------------------------------------------------------------------------------------------------------------------------------------------------------------------------------------------------------------------------------------------------------	-------------------------------------------------------------------------------------------------------------------------------------------------------------------------------------------------------------------------------------------------------------------------------------------------------------------------------------------------------------------------------------------------------------------------------------

다. 검토

1) 의무주체

개정전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 주체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에 한정됨. 여기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간주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음.⁵⁰⁾

<표 2-3>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개정된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창구역할을 하는 P2P, 웹하드 등을 운영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여 유통방지의 주체를 확장함.

2) 유통방지의 대상

개정전에는 유통방지의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

5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한정하였으나, 개정후 규정에 따르면,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대함.

<표 2-4>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소결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통되는 채널이 웹하드, P2P인 점에서 의무주체에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불법촬영물의 대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개정이라고 보임.

그리고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확보조치라고 여겨지지만, 불이행 시 “의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향후 불이행이 “의도”적인지 “단순 과실”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제 4 절 제21대 국회 제출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현황

<표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5	2102828	2020-08-07	전용기 의원	<p>온라인상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에 따라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종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음.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져왔음.</p> <p>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그 공연성과 전파력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에 맞는 법제 마련이 시급한 점을 인정받아, 현행법 또한 이를 반영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 형법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조성됨. 그러나 실제 온라인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욕과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 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7 및 제70조).</p>
4	2102383	2020-07-27	한병도 의원	<p>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p> <p>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p>

				<p>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여서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p> <p>그러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타인사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p> <p>이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p>
3	2102374	2020-07-24	태영호 의원	<p>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p>

				<p>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p> <p>이러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p> <p>특히 학생의 사이버폭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54.7%로 오히려 전년도 43.1% 대비 11.6%나 폭증하였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p> <p>이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p>
2	2102291	2020-07-22	윤영찬 의원	<p>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p> <p>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p>
1	2101954	2020-07-15	양경숙 의원	<p>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p>

				<p>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그런데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p>
--	--	--	--	-------------------------------------------------------------------------------------------------------------------------------------------------------------------------------------------------------------------------------------------------------------------------------------------------------------------------------------------

나.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 보관의무(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954)

1) 주요 내용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표 2-6>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인터넷개인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시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p>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정보 보관의 방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p> <hr/>
<p>1. ~ 4. (생략)</p> <p><신설></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5. ~ 24. (생략)</p>	<p>5. ~ 24. (현행과 같음)</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2) 검토

이는 선정적, 폭력적 영상 등 불법정보가 유통된 이후 사후적인 규제 예컨대 민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정보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정보보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임. 이를 위하여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 유통을 매개하는 자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콘텐츠의 보관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고 그 보관으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영상콘텐츠제작자의 경우에게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291)

1) 주요 내용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받

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표 2-7>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2) 검토

이 개정안은 망법상 명예훼손정보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의 이른바 징벌배상(안 제44조의11 제2항) 및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제1항 단서)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미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과의 차이점은 징벌배상의 규정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할 것인데, 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만 이러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민법상 명예훼손

불법행위책임체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은 개정안 제3항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써 피해사건별로 손해액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굳이 징벌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함

* 징벌배상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④ <생략>

라.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의 법정교육의 전환(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374)

1) 주요내용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2-8>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363 427 464 456"><신 설></p>	<p data-bbox="810 427 1257 725">제44조의11(사이버폭력 예방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data-bbox="831 732 1257 1066"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 data-bbox="810 1075 1257 1339">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 data-bbox="810 1348 1257 1473">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 data-bbox="810 1482 1257 1579">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ol data-bbox="831 1588 1257 1641"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실시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은 사이버공간에서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 또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2009년부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공부문에 한하여 의무교육화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할 것임

※ 예방교육 사례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

마.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의 처벌(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383)

1)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

<표 2-9>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4.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 ----- -----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p>4. ~ 7. (생략)</p> <p>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한 자</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 -----.</p>
-----------------------------------------------------------------------------	---------------------------------------------------------------------------------------------------------------------------

2) 검토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 경우 사기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도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신용의 침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임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 피해 발생 없이도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가 사이버 상에서 신용을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그리 높은지는 의문이 있음.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사칭행위는 상당히 만연되어 있으며 이를 사이버공간의 이용자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듦. 만일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타인의 사칭행위의 불이익이나 폐해가 현실 공간보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실태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바.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 규제(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828)

1) 주요 내용

실제 온라인 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욕과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2-10>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명예훼손 제44조의7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모욕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생략)	제7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_____ ----- 훼손하거나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검토

이 조문은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살사고가 있는 경우 그 자살에 대하여 교사 또는 방조죄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임

그러나, 혐오 또는 차별 표현의 폐해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규제 여부 또는 방식에 대하여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음.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의적으로 그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를테면 나찌하에서 유대인 학살등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독일이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 일본에서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KISO, 2020년 KISO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자료집 참고할 것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 또는 차별 표현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 필요함.

그리고, 자살사고와 혐오·차별 표현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자살 교사 내지 방조의 범

죄로 처벌하는 벌칙을 도입하고 있는데(안 제70조 제3항), 형사법상 혐오·차별 표현과 자살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자살사고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하기 어려움. 오히려 혐오·차별 표현을 규제한다면 그 자체를 형벌로 규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 현황

<표 2-11>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5	2102763	2020-08-06	권인숙의원	<p>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p> <p>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p> <p>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p>
4	2102677	2020-08-04	진선미의원	<p>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7조제3항).</p>

				<p>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3조제2항).</p> <p>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p> <p>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2호).</p> <p>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 및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등에 접근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관련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및 가족 등의 신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p>
3	2100613	2020-06-17	김예지의원	<p>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p> <p>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p>

				<p>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p> <p>이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1호).</p>
2	2100567	2020-06-16	윤영석의원	<p>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물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유포한 범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작·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배포·전시·공연·소지 등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협박 등 강요행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p>

1	2100357	2020-06-11	권인숙의원	<p>제안이유</p> <p>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p> <p>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러한 성적 목적의 유인·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p> <p>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p>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p> <p>주요내용</p> <p>가.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p> <p>나.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p>
---	---------	------------	-------	------------------------------------------------------------------------------------------------------------------------------------------------------------------------------------------------------------------------------------------------------------------------------------------------------------------------------------------------------------------------------------------------------------------------------------------------------------------------------------------------------------------------------------------------------------------------------------------------------------------------------------------------------------------------------------------------------------------------------------------------------------------------------------------------------------------------------------------------------------------------------------------------------------------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	--	--	--------------------------------------------------------------------------------------------------------------------------------------------------------------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의 처벌 및 위장수사 근거 신설(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357)

1) 주요 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표 2-12>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나.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p>5. ~ 9. (생략)</p> <p>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생략)</p> <p>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p>	<p>권유하는 행위</p> <p>5. ~ 9. (현행과 같음)</p> <p>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자 <p>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2.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되 수사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2) 검토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한 자를 처벌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신분위반의 수사행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1) 성적 유인·권유행위 개념의 불명확성

먼저, 성적 유인·권유행위 중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성적 목적의 대화라는 개념은 ‘성적 목적’에는 성적 행위의 목적이나 성적 교육의 목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으로서의 명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2)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에 대한 검토

○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사방법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인이나 범죄현장에 접근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안 제25조의2), 위장수사기법은 이른바 함정수사와 관련된 것으로써 함정수사 자체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위법논란이 있어 왔고, 만일 위법한 경우에는 그 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증거가 되므로 함정수사의 위법 논란을 피해 하기 위한 치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위장수사의 개념과 입법례

- 수사기관의 비밀수사방법에는 신분위장 수사와 비공개 수사로 구분되고, 비공개수사는 일반적인 수사활동상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위장수사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등 수사관련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하면 위장수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합정수사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독일 형사소송법은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110조a). 다만 이 규정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독일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위장수사는 수사 투입시 검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제110조b 제1항) 특정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관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제110조b 제2항 제1문)⁵¹⁾

제110조a(비공개수사관) ①다음에 열거한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1. 금지된 마약류거래 또는 무기거래 및 통화나 유가증권위조의 영역
2. 국가보호의 영역(법원조직법 제74조a 및 제120조)에서
3. 업무상으로는나 상습적으로 또는
4. 범죄단체구성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

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연쇄범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당해 투입조치는 다른 방법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범죄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또한 다른 조치로는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51) 독일 사례에 대하여는 민영성·강수경(2018),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31-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할 것.

②비공개수사관이라 함은 부여된 신분변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사하는 경찰직 공무원(비밀요원)을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변경된 신분으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③비밀요원의 신분을 구축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제작, 변경,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10조b(검사, 법관의 동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①비공개수사관의 투입은 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긴급을 요하지만 검사의 결정이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경찰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검사가 3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한다.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입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비공개수사관 투입을 위한 요건이 존속하는 한, 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수사관의 투입은 판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특정 피의자에 관한 경우

2.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주거에 비공개수사관이 출입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검사의 결정이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경찰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판사가 3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 제3문과 제4문을 준용한다.

③비공개수사관의 신분은 그 투입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로 유지한다. 투입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검사와 판사는 그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비공개수사관의 신분공개가 비공개수사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를 위협하거나 당해 비공개수사관의 계속적인 활용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제96조를 기준으로 그 신분의 비밀유지가 허용된다.

○ 검토

-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

n번방 사건 등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는 위장수

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⁵²⁾이
는 위장수사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기본권의 침해가 우려
되기 때문임

- 인터넷의 특성 고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성상 인터넷 참여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상
대방이 신분을 속이고 대화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보고 있지 않음(BVerfG, Urteil v.
27.2.2008 - 1 BvR 370/07 und 1 BvR 595/07, Rn. 311.)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
죄현장인 정보통신망에서 범인에게 접근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 상시적인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이라는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음. 물론 법안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판단을 사법경찰관이 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실효적인 요건이라고 하기 어려움

- 법적 근거의 필요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일반
수권조항 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 근거 조항에 의하여 위장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가
능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법률수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음
문제는 어떤 법률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
도 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⁵³⁾에 근거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모두 경찰

52) 아시아경제, n번방 사건에 높아진 "함정수사 허용" 여론...적법? 위법?, 2020.4.22.자.

53)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연구안(위 민영성, 강수경, 387면).

제6조의2(인터넷 비밀수사관) ① 인터넷비밀수사관은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위장된 신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경찰관이다.

② 인터넷 비밀수사관은 인터넷회선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투입될 수 있다. 단, 그 투입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허용된다.

관직무집행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근 n번방 사건 등의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법률 규정의 내용(특히 절차적 통제)

위장수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법원에 의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수사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통제장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하고 있음. 이를테면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검사 및 법원에 의한 영장절차에 의한 통제, 위법 수집증거의 배제원칙 등을 통한 피의자, 피고인 인권 보장원칙을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음

※ 의안번호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안번호 2102677)과 비교

진선미의원안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규정(제1항 2문),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통제 장치 및 수사기간의 제한(제2항, 제3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제4항) 등 절차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나, 여전히 검사 또는 법원에 의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표 2-13> 위장수사 입법안 비교

권인숙의원 발의안	진선미의원 발의안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 및 제15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③ 제2항에 따른 범죄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인터넷비밀수사관의 투입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p>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다.</p> <p>1.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p> <p>2.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p> <p>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되 수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에게 접근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p> <p>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p> <p>2. 위장된 신분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p> <p>②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p> <p>③ 사법경찰관리는 갱신 결정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수사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수사를 중지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제1항의 수사상 허용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4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이 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목적의 접근행위 등의 처벌(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567)

1) 주요 내용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배포·전시·공연·소지 등의 경

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였다라도, 협박 등 강요행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표 2-14>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④ (생략)</p> <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p> <p><신설></p> <p>⑥ (생략)</p> <p>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 4. (생략)</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④ (생략)</p>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hr/> <p>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p> <p>2.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는 행위</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p> <hr/> <p>-----</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p> <hr/>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2) 검토

이 개정안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케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제14조 제1항 제1의2), 다만 시청 목적으로 접근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구성요건행위인 ‘접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안 제11조 제5항 제2호)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공개 개선(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613)

1)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하지만 현행법상 제한이 있고, 또한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표 2-15>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생략)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_____ 공개기간 _____.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생략)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_____.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1. _____ 방송 _____

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생략)

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

(1) 공개기간의 연장

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기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정보통신망상 공개정보의 활용 예외 인정

제안이유에 의하면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문은 ‘공개정보의 악용 금지’라는 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정보가 법에 의하여 공개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금지되는 방법으로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개정보의 악용을 금지할 필요가 인정되는한 정보통신망만 제외하여 허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55조가 실효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법정형 상향 등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677)

1)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표 2-16>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_____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_____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 _____ -----제 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3의2. ~ 9. (생 략)	3의2. ~ 9.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② (생 략)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_____ -----유기 징역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생 략)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수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_____ -----5천 원-----.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생략)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생략)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5천원_____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3년_____3천만원_____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목적의 접촉 및 성적 유인·권유 행위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경우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경우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같은 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의 죄
3. (생략)

<신설>

③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9세 이상의 사람이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 및 제1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에게 접근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제65조(벌칙)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

2. 위장된 신분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획득하는 것

②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갱신 결정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수사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수사를 중지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제1항의 수사상 허용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한 기간은 4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①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배우자·자녀·직계존속에게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의 피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_____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원을 공개한 자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2) 검토

법정형의 상향(안 제7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목적의 접촉 및 성적 유인·권유 행위의 처벌(안 제15조의2), 공소시효 특례는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수사 특례 조문(안 제25조의2)는 기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의안번호 2100357과 비교하여 보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규정(제1항 2문),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통제 장치 및 수사기간의 제한(제2항, 제3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제4항) 등 절차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것임

바. 이동성착취물 사이트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763)

1) 주요 내용

이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이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이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

<표 2-17>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신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 ⑦ (생략)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2조(양벌규정) _____

제4조제3항 _____

_____ 제11조제1항부터 제7

항까지 _____

제59조(포상금) ① _____

_____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_____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 제21대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현황

1) 개정안 개요

21대 국회 임기(2020. 5.30. - 2024. 5.29.)가 시작된 이후에 총 5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주요내용은 ① 특정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사용강요 금지, ② 앱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 등록 금지,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리한 계약체결 금지 등), ③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및 산정기준, 자료제출명령 실효성 확보방안, 동의의결제 도입, ④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 등이 있음.

<표 2-18> 제21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5	2102884	2020-08-11	박성중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앱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p> <p>앱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에서의 세금 의무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p>

				<p>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p>
4	2102524	2020-07-30	홍정민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의 9 및 제104조).</p>
3	2101585	2020-07-07	정부	<p><제안이유></p> <p>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p>

			<p>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p> <p>나.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p> <p>다.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함.</p>
--	--	--	----------------------------------------------------------------------------------------------------------------------------------------------------------------------------------------------------------------------------------------------------------------------------------------------------------------------------------------------------------------------------------------------------------------------------------------------------------------------------------------------------------------------------------------------------------------------------------------------------------------------------------------------------------------------------------------------------------------------------------------------------------------------------------------------------------------------------------------------

			<p>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p> <p>라.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p>마.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3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p>바.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p>
--	--	--	------------------------------------------------------------------------------------------------------------------------------------------------------------------------------------------------------------------------------------------------------------------------------------------------------------------------------------------------------------------------------------------------------------------------------------------------------------------------------------------------------------------------------------------------------------------------------------------------------------------------------------------------------------------------------------------------------------------------------------------------------------------------------------------------------------------------------------------------------------------------------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2	2100358	2020-06-11	권인숙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p> <p>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p> <p>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p> <p><참고사항></p> <p>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p>
1	2100337	2020-06-10	노웅래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p>

				<p>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이론적으로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 속도 역시 이론적인 최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p> <p>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1항).</p>
--	--	--	--	--------------------------------------------------------------------------------------------------------------------------------------------------------------------------------------------------------------------------------------------------------------------------------------------------------------------------------------------------------------------------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 포함(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358)

(1) 제안이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2) 주요 내용

<표 2-19>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3) 검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도 아동·청소년에 관한 불법촬영물에 못지 않게 유통이 방지하여야 할 정보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을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표 2-20>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나. 제20대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1) 개정안 발의 현황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10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아동·청소년 보호, 음란물 유통금지 또는 불법촬영물 유통금지 등이 포함되거나 관련된 개정안은 총12개가 발의되었음

<표 2-21> 제20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번호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2	2024959	2020-05-20	위원장	<p>1.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p> <p>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p> <p>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p> <p>또한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 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p>

				<p>2. 대안의 주요내용</p> <p>가.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했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p> <p>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p> <p>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p> <p>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8).</p> <p>마.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p>
11	2024924	2020-05-04	이원욱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p> <p>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임.</p> <p>한편,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해당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삭제</p>

				<p>등 기술적 조치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운영할 경우 수탁자에 의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2조의6, 제95조의2 및 제104조 신설 등).</p> <p>또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6항 신설 및 제104조 등).</p>
10	2017867	2018-12-28	민경욱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여 사실상 유포를 방조하며,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까지 운영하는 등 총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생산·유통·삭제가 하나의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음.</p>

				<p>이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 또는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등).</p>
9	2017659	2018-12-21	제윤경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현행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일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줄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p> <p>이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등).</p>
8	2017557	2018-12-14	이채익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p>

				<p>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유통·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임.</p> <p>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등).</p> <p><참고사항></p> <p>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p>
7	2017442	2018-12-10	권미혁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p> <p>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처</p>

				<p>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 신설).</p>
6	2017312	2018-12-07	권미혁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현행법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정보에 대하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사행행위에 관한 정보 등 음란정보 이외의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웹하드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p> <p>또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웹하드 사업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 3제1항제2호).</p>
5	2017102	2018-12-05	위원장	<p>1. 대안의 제안이유</p> <p>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p> <p>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p> <p>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p>

				<p>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p> <p>2. 대안의 주요내용</p> <p>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p> <p>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안 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p> <p>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p> <p>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5, 안 제34조의2 신설).</p> <p>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 및 제104조).</p>
4	2017013	2018-12-03	권미혁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p> <p>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전단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p>

				<p>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제1호의2 신설).</p> <p><참고사항></p> <p>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p>
3	2014522	2018-07-30	박선숙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이하 “불법정보등”이라 함)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국내에 별도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 또는 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의 유통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통하기도 쉽지 않음.</p> <p>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등</p>

				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2	2012305	2018-03-05	송희경의원	<p><제안이유 및 주요내용></p> <p>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 등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p> <p>한편,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이버머니의 취득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p> <p>이에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다목 및 제22조의3제6항 신설 등).</p>
1	2004135	2016-12-06	정부	<p>1. 제안이유</p> <p>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결제를 도입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하는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p>

			<p>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2. 주요내용</p> <p>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안 제92조제1항제1호)</p> <p>인터넷방송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p> <p>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p> <p>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을 하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함.</p> <p>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2 신설)</p> <p>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p> <p>2)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p> <p>3)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p>
--	--	--	--------------------------------------------------------------------------------------------------------------------------------------------------------------------------------------------------------------------------------------------------------------------------------------------------------------------------------------------------------------------------------------------------------------------------------------------------------------------------------------------------------------------------------------------------------------------------------------------------------------------------------------------------------------------------------------------------------------------------------------------------------------------------------------------------------------------------------------------------------------------------------------------------------

			<p>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p> <p>라.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p> <p>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추가함.</p> <p>마.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p> <p>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p>
--	--	--	---------------------------------------------------------------------------------------------------------------------------------------------------------------------------------------------------------------------------------------------------------------------------------------------------------------------------------------------------------------------------------------------------------------------------------------------------------------------------------

제 3 장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국외 법제 현황

제 1 절 미국

1. 개요⁵⁴⁾

○ 미국의 법률은 실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노골적 성행위에 연루시키거나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노골적인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국내외에 배포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포르노그래피로 금지하고 있음. 여기에는 식별 가능한 실제 미성년자와 거의 유사하게 보이도록 조작, 수정을 한 사진,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 등도 포함됨. 현상되지 않은 필름,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도 시각 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모두 음란물 규제 대상임 (18 U.S.C. § 2256) 이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수령, ‘소지’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기 때문임. (18 U.S.C. § 2251; 18 U.S.C. § 2252; 18 U.S.C. § 2252A)

○ 또한 시각적 묘사를 제작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하고 있음. 설령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노골적 성행위에 연루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은 불법임(18 U.S.C. § 2251)

○ 연방 법률의 관할은 미국 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우편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음란물이 연방 법무부의 관할임

54)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criminal-ceos/citizens-guide-us-federal-law-child-pornography>

○ 부모, 법적 후견인 기타 양육권을 지닌 사람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할 목적으로 아동의 양육권을 판매하거나 사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18 U.S.C. § 2251A)

○ 최근 미국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수입하거나 전송하려는 목적을 인지하고 이를 미국 밖에서 제작, 수령, 전송, 배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18 U.S.C. § 2260)

○ 아동포르노그래피 관련 연방법률의 위반은 중대한 형벌의 대상이 되는데, 연방법전 제18장 제2251조(18 U.S.C. § 2251)를 위반해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한 초범은 벌금과 함께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제18장 제2252조(18 U.S.C. § 2251)를 위반해 미국 내 또는 해외 상거래를 위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전송한 사람은 벌금과 함께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의 대상이 됨. 이에 더해 (i) 폭력적이고 사디즘, 마조히즘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거나, (ii)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되거나, (iii) 아동 성적 착취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형벌이 가중됨. 또한 주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연방 법률 위반과 별도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음

2. 행정기관: 법무부 아동착취음란물과

(U.S. Department of Justice Child Exploitation And Obscenity Section)

○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연방법률 상 형벌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에 별도 전담 부서(아동착취음란물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이 FBI, 첨단기술조사국 (High Technology Investigate Unit), 각 주별로 소재한 연방검찰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s), 국립 실종.착취 아동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과 협력하여 전국의 법 위반 현황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아동포르노그래피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전통적인 사법관할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임. 미국 법무부 아동착취음란물과는 첨단기술조사국의 포렌식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의 법 집행조직과 전문가를 교육하고 있으며 연방 법률

의 제.개정, 법 집행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중

3. 구체적인 규정

가. 미국연방법전 제18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6조 (정의)⁵⁵⁾

○ “미성년자”란 만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칭함

○ “노골적인 성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란 (i) 동성 또는 이성 간 생식기-생식기, 구강-생식기, 항문-생식기, 항문-구강을 통한 성적인 삽입 행위, (ii) 수간, (iii) 자위 행위, (iv) 사디즘, 마조히즘적 학대, (v) 사람의 항문, 생식기, 치골을 선정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 또한 “노골적인 성행위”에는 (i) 동성 또는 이성 간 생식기-생식기, 구강-생식기, 항문-생식기, 항문-구강을 통한 성적인 삽입행위의 그래픽이나 생식기, 흉부, 치골을 노출한 채 선정적으로 성적인 삽입행위를 모방(simulate)하는 것, (ii) 수간, 자위, 사디즘.마조히즘적 학대를 그래픽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모방한 것, (iii) 사람의 항문, 생식기, 치골을 선정적으로 노출한 것을 그래픽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모방한 것도 포함될 수 있음

○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에는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되거나,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시각 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는 데이터 등이 포함됨

○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란 노골적인 성행위를 전자적, 기계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진, 영화, 비디오, 그림, 또는 컴퓨터 이미지나 그림 등의 시각적 묘사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A) 미성년자를 노골적인 성행위에 관여시키거나 (B) 미성년자를

55) 17 U.S.C. § 2256. Definitions for chapter (Pub. L. 115-299, § 7(c), Dec. 7, 2018, 132 Stat. 4389.)

노골적인 성행위에 관여한 미성년자의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가거나 (C)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가 노골적인 성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게끔 제작되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함

○ “식별 가능한 미성년자”란 해당 시각적 묘사가 제작·조정·수정될 때에 실제 미성년자이거나 시각적 묘사에 활용된 이미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의미하며, 사람의 얼굴과 특징(출생점 등)에 따라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나. 미국연방법전 제18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1조 (아동의 성적 착취 금지)⁵⁶⁾

○ 노골적인 성행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와 관련된 시각적 묘사(visual depiction)를 국내외로 전송하여 상거래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유인하거나, 미성년자를 국내외로 이동시키는 사람은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만약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 인신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생산, 소유, 수령, 전송, 판매, 유통 등에 종사함으로써 인해 주 법률 위반과 병합되는 경우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위와 같은 범죄에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것을 방조한 부모, 양육권자, 법적 후견인 또한 같은 수준의 형벌의 대상이 됨

다. 미국연방법전 제18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2조 (아동 판매 또는 구입 금지)⁵⁷⁾

○ 미성년자가 노골적인 성행위에 직접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이 연루되는 것을 돕는 사람으로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거래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양육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한 부모, 법적 후견인 기타 양육권자와 이를 구입한 사람은 벌금과 더불어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6) 17 U.S.C. § 2251.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Pub. L. 110-401, title III, § 301, Oct. 13, 2008, 122 Stat. 4242.)

57) 17 U.S.C. § 2252. Selling or buying of children (Pub. L. 110-358, title I, § 103(a)(2), (b), Oct. 8, 2008, 122 Stat. 4002, 4003.)

라. 미국연방법전 제18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2A조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매체와 관련한 금지행위)⁵⁸⁾

○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미국 내 또는 미국 외 상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송, 배송하거나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령하고 배포하는 행위 및 재생산, 광고, 홍보, 판매 권유를 행위는 금지됨 - 벌금과 함께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미국 내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보려는 목적으로 이미지가 포함된 책, 잡지, 정기간행물, 영화,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크 등의 매체를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됨 -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다만 해당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노골적인 성행위에 관여되어 있는 시각적 묘사를 미성년자에게 공급하거나 배포하거나 보내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됨 - 벌금과 함께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을 착취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여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짐

○ 다만, 해당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에 관여한 실제 사람들이 제작 당시 모두 성인이었다면 면책사유에 해당함. 또한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3개 미만으로 소유하였거나, 즉시 삭제를 하였거나, 법 집행기관에게 보고를 한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함

58) 18 U.S. Code § 2252A.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Pub. L. 115-299, § 7(b), Dec. 7, 2018, 132 Stat. 4388.)

마. 미국연방법전 제18장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60조 (미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제작하는 행위의 금지)⁵⁹⁾

○ 미국 외에 소재하는 사람이 해당 시각적 묘사를 미국 또는 미국 국경 밖 12마일 내의 해안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전송하거나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노골적인 성행위에 관여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것을 돕도록 채용, 설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벌금과 더불어 15년 이하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

○ 그리고 그러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유통하려는 목적에서 수령, 전송, 배송, 배포, 판매, 소지하는 등을 금지함 - 벌금과 더불어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바. 미국연방법전 제47장 제22조(이른바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⁶⁰⁾

○ 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의 한 장으로 제정됨

○ 제223조(a)항은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이 미성년자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통신장비를 이용해 음란하거나 또는 품위가 없는(외설적인) 문구, 이미지, 제안, 요청 등을 만들거나 광고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⁶¹⁾

59) 18 U.S. Code § 2260. Production of sexually explicit depictions of a minor for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Pub. L. 110-401, title III, § 303, Oct. 13, 2008, 122 Stat. 4242.)

60) 47 U.S.C. § 223 (Pub. L. 104-104, title V, § 502, Feb. 8, 1996, 110 Stat. 133)

61) 47 U.S.C. §223 (Pub. L. 104-104, title V, § 502, Feb. 8, 1996, 110 Stat. 133)

(a) Prohibited acts generally Whoever--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B)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

(i) makes, creates, or solicits, and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indecent,

○ 제223조(b)항은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현대 사회 상규에 비추어보았을 때 명백하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저속물, 노골적인 혐오물, 음란물을 고의로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행위 또는 배설과 관련된 행위나 생식기관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문구, 이미지, 제안, 요청 등을 만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만 18세 이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을 (만 18세 이하의 사람이 설령 먼저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⁶²⁾

○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인증장치(신용카드 정보, 성인 식별번호 요구 등)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면책사유로 인정됨⁶³⁾

know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communication is under 18 year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 . .)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62) (d) Whoever--

(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knowingly--

(A) uses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send to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or (B) uses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display in a manner available to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that, in context, depicts or describes, in terms of patently offensive as measured by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 regardless of whether the user of such service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or

(2)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such person's control to be used for an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63) 47 U.S.C. §223 (Pub. L. 104-104, title V, § 502, Feb. 8, 1996, 110 Stat. 133)

(e) In addition to any other defenses available by law:

(5) It is a defense to a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a)(1)(B) or (d), or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the use of a facility for an activity under subsection

(a)(1)(B) that a person--

○ 하지만, 1997년 연방대법원은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판결⁶⁴⁾에서 이 법률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시민단체 ACLU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품위가 없는”(indecent) 콘텐츠를 통신장비로 전송하는 것과 “명백하게 모욕적인” 콘텐츠를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함

○ 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동 조문이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였음

① 인터넷이 매우 오픈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어려움

② 라디오나 방송과 달리 인터넷은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요하는 양방향 매체임

③ 이메일, 채팅룸 등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일일이 식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모든 비영리 웹사이트에까지 성인인증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듯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④ 예술활동이나 정치캠페인 등에서도 외설적이거나 명백하게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음

⑤ ‘외설적’(indecent)이거나 ‘명백히 모욕적’(patently offensive)이라는 불확정적인 기준에 따라 의사소통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

(A) has taken, in good faith, reasonable, effective, and appropriate ac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to restrict or prevent access by minors to a communication specified in such subsections, which may involve any appropriate measures to restrict minors from such communications, including any method which is feasible under available technology; or

(B) has restricted access to such communication by requiring use of a verified credit card, debit account, adult access code, or adul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64) *Reno v. Am. Civ.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⑥ 더군다나 이 조항은 ‘형벌’을 예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말하기 보다 침묵하기를 강요할 것 예상되며 이는 인신에 가해지는 제약을 두려워하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⑦ 이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래 이 법률에서 규제하고자 하지 않았던 성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도 제약할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음란한”(obscene)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고, 2003년, 의회는 법률을 개정하여 ‘외설적’(indecent), ‘명백하게 모욕적’(patently offensive)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법원에서 확정적인 범죄 행위라고 긍정하여 온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 포르노그래피’(obscene or child pornography)라는 문구로 제223조 제(a)항과 제(d)항의 요건을 개정함⁶⁵⁾

참고: 음란물 여부 판정을 위한 밀러(Miller) 테스트 (1973)⁶⁶⁾

< 3단계 테스트 >

① 일반적인 사람이 현대의 “사회 상규(community standards)”에 비추어볼 때 해당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색욕에 호소한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음

② 해당 콘텐츠가 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모욕적인 방식으로 성행위 또는 배설기능을 묘사하거나 서술하고 있음

③ 해당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문학, 예술, 정치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

무엇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연방대법원 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음. 스튜어트 대법관은 법원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한다”면서 법원이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등 최소한만을 형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마도 나는 지적으로 이를 판별해낼 기준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 그냥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고 밖에 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김⁶⁷⁾

Miller v. California (1973)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란 광고를 우편으로 유통한 사람

65) 47 U.S.C. §223 (Pub. L. 108-21, title VI, § 603, Apr. 30, 2003, 117 Stat. 687)

이 캘리포니아 주 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 유통(“distribute any obscene matter”)에 해당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게 되면서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한 사건임

법원은 이 사건에서 Miller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재심리를 할 것을 주문함

법원은 음란물 관련 규율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콘텐츠만을 규제해야 한다는 “밀러 테스트”를 제시하였으며, 2020년 현재까지도 이 판례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음

사. 미국연방법전 제47장 제254조(아동 인터넷 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 CIPA)⁶⁸⁾

○ 공립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 시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연방방송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소관임. ‘통신품위법’과 함께 미성년자의 유해정보 이용을 차단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법률임

○ 이 법률은 공립 초중고등학교(K-12 schools)와 공립도서관에 (1) 밀러테스트에 따른 음란물, (2) 아동포르노그래피, (3) 기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FCC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1) 나체, 성행위, 배설과 관련되어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고, (2) 명백히 모욕적(patently)인 방법으로 성행위나 성적 접촉을 하거나 모사하는 행위를 표현하거나 음부를 노출하였으며, (3) 전체적으로 보았

66)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93 S. Ct. 2607, 37 L. Ed. 2d 419 (1973)

67) Jacobellis v. Ohio, 378 U.S. 184, 197 (1964) (Stewart, J., concurring)

68) 47 U.S.C. § 254(h)(1)(B) (Pub. L. 106-554, § 1(a)(4) [div. B, title XVII, §§ 1721(a)-(d), 1732], Dec. 21, 2000, 114 Stat. 2763, 2763A-343 to 2763A-350)

을 때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

○ 인터넷 관련 연방 재정 지원(Universal Service Fund)을 받고 있는 지역의 학교나 도서관은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사용해야 할 의무 : 위반 시 연방 재정지원 중단

○ 이에 미국 공공도서관 연합(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은 통신품위법의 일부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ACLU와 협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1) 종래 낙후된 지역에 분배되는 연방재정지원을 삭감할 경우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2) 어떤 소프트웨어도 효과적으로 유해정보를 필터링해낼 수 없으며, (3)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하급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연합이 승소하였으나,⁶⁹⁾ 대법원에서는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던 통신품위법과 달리 제재가 재정지원 삭감에 그치는 점, 정부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폭넓은 재량을 지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기존 법률이 존치됨⁷⁰⁾

아. 미국연방법전 제15장 제6501-6505조(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of 1998)⁷¹⁾

○ 아동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부모에게 뒀으로써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수집되어 온라인 상에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소관임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웹사이트 운영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시 아동의 부모에게 통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69) American Library Ass'n, Inc. v. United States, 201 F. Supp. 2d 401 (E.D. Pa. 2002)

70)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539 U.S. 194 (2003).

71) 15 U.S.C. § 6501-6505 (Pub. L. 111-203, title X, § 1092, July 21, 2010, 124 Stat. 2094.)

자. 「닷키스 적용효력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해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kids.us'라는 도메인명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사이트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법

○ 폭력이나 포르노 등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채팅룸, 인스턴트메시지 등의 외부 도메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만 부여

○ 미국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에서 부모들을 교육하거나 제도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차. 「아동 인터넷 설계 안전(KIDS) 법」(The Kids Internet Design and Safety (KIDS) Act)

○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Edward Markey와 Richard Blumenthal이 《아동 인터넷 설계 안전(KIDS) 법안》을 상정함, 이는 유튜브, 스냅챗 등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플랫폼 소비 시간이 급증하고 있어 과도한 인터넷 서비스 및 앱 사용을 방지하고 광고 규제를 통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⁷²⁾

○ 이 법안은 배경, 용어 정의, 인터넷 플랫폼 규제, 마케팅 및 상업화, 투명성과 감사, 지원 프로그램, 행정 및 법집행으로 구성

○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하는 제4절이라고 할 수 있음,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7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상원, 어린이 인터넷 설계 안전(KIDS)법안 상정(2020. 3. 5.)', 인터넷 법제동향 제150호, 2020, 11면.

<표 3-1>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규제 - 특정 기능 제공 금지

금지 기능	내용
자동재생 (auto-play) 기능	어린이·청소년의 장시간 시청 습관을 유도할 수 있는 자동재생 기능 제공 금지
자동 알림 (push alerts) 기능	어린이·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자동 알림 기능 제공 금지
관여도 (engagement)나 피드백 제공 기능	게시물의 '조회 수'나 '좋아요' 등의 관여도(engagement)나 피드백의 건수를 보여주는 기능 제공 금지
구매나 콘텐츠 등록 유도 등의 기능	아동·청소년의 미숙함을 악용하여 구매나 콘텐츠 등록 또는 플랫폼 내에서 시간을 더 보내는 등의 상황을 부추길 수 있는 기능이나 설정 제공 금지
보상배지(badges) 제공기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웹이나 앱 상에서의 소비 시간이 늘어날 때 부여되는 보상배지(badges) 기능 적용 금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상원, 어린이 인터넷 설계 안전(KIDS)법안 상정, 12면 재구성

○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청소년이 폭력, 도박,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한 콘텐츠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사용자 고발 메커니즘을 탑재하여야 함

○ 광고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게는 호스트 셀링(host-selling),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박싱(unboxing)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되고, 니코틴, 담배, 주류 등의 콘텐츠 등도 추천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에서 정하는 벌칙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광고(false advertisements)의 경우에는 매 위반 건당 최대 5,000 달러 또는 최대 6개월 구류형, 부당(unfair)하거나 기만적(deceptive)인 영업 관행에는 매 위반 건당 최대 10,000 달러 또는 최대 12개월 구류형벌금 및 구류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³⁾

73)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 13면

카. 주 법률: 「캘리포니아 아동 연기자 보호법」 (California Child Actor's Bill of 1939)

○ 아동·청소년 배우가 그들의 소득을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 하에 보호하고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 미성년자인 배우, 무용수, 음악가, 코미디언, 가수 또는 기타 공연자 또는 연예인, 또는 작가 등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신탁회사의 계좌(일명 쿠건 계좌)로 입금해 관리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어야 함

○ 만일 미성년 연예인의 신탁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신탁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미국 배우기금(AFA)에 미성년 연예인 총 임금의 15%를 입금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로 하여금 쿠건법에 의한 신탁계좌의 개설을 유도하고 있음.⁷⁴⁾

○ 또한 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조명 노출 시간, 촬영시간, 학습권 등도 규정하고 있음, 유아의 경우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되면 안 되고, 촬영시간은 6세가 되면 6시간, 7세가 되면 최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표 3-2> 미성년자 근로 가능 시간 기준

연령	근로시간	체류가능시간	근로가능시간대
생후 15일 ~ 6개월 미만	최대 20분	최대 2시간	9:00 ~ 11:30 및 14:00 ~ 16:30
6개월 ~ 2세 미만	최대 2시간	최대 4시간	
2세 ~ 6세 미만	최대 3시간	최대 6시간	
6세 ~ 9세 미만	최대 4시간	최대 8시간	학기중이 아닌 경우 6시간까지 연장 가능
9세 ~ 16세 미만	최대 5시간	최대 9시간	학기중이 아닌 경우 7시간까지 연장 가능

출처 : 박석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17면 재구성

74) 다만 신탁계좌를 만드는데 10일의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여 미성년 연예인의 고용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여 수입을 가로채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튜디오 교원 제도를 두고 있음, 학교 교육이 필요한 아역배우를 캐스팅할 경우 제작사는 촬영현장에 교사를 고용, 촬영장에서도 평균 3시간 정도의 학습시간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교사는 노동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며 학생에게 가르친 내용, 성적 평가 등을 해당 학교나 지역 교육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또한 사는 학습 외에도 아동의 건강, 안전 보장 및 윤리도 지도해야할 의무가 있음

타. 주 법률: 뉴욕 「어린이 연기자 교육과 신탁에 관한 법」 (Child Performer Education and Trust Act 2003)

○ 쿠건법의 영향을 받아 뉴욕시에서도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CRR-NY)의 Title 12(Department of Labor) Part 186(Child Performers)⁷⁵⁾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신탁계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 연예인의 신탁계좌는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로, 뉴욕시에서 미성년 연예인 고용허가를 위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신탁법과 노동법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계좌(trust or custodial account)의 개설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⁷⁶⁾

○ CRR-NY도 미성년 연예인의 최소 총 수입의 15% 이상을 신탁계좌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미성년 연예인의 신탁계좌상의 금액이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수탁자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직접 신탁계좌를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교육부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뉴욕주의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①줄 타는 사람, ②체조선수(단, 비전문 선수 또는 아마추어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 ③말이나 기타 동물에 타는 사람(비전문

75) Part 186은 목적, 정의,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 고용주의 책임, 의무교육,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허가서 및 증명서, 벌칙조항 등을 10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6) 남기연·권오석, 「미성년 연예인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통권 제50호, 2017, 191-192면.

승마 쇼에 나가는 경우 제외), ④곡예사, ⑤자전거 및 기타 기계의 탑승물이나 장치에 타는 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위법적, 외설적, 부도덕한 전시나 행위 그리고 장애아를 전시회에 출현시키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⁷⁷⁾

77) 박석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아동(청소년)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09, 17면.

제 2 절 유럽연합

1.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 7월 24일 ‘보다 효과적인 아동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 전략(EU strategy for a more effective fight against child sexual abuse, 2020-2025)’을 발표함⁷⁸⁾

○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일생에 걸친 충격을 남기게 되며 유럽연합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 아동의 1/5가 성 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함. 특히 COVID-19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줄면서 온라인(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 아동포르노графи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 오프라인(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동성매매를 강요하는 것) 성범죄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일부 회원국에서는 COVID-19 이후 25% 이상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놓음

○ EU 내 아동성범죄 신고건수는 2010년 2만 3천 건에서 2019년 72만 5천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Internet Watch Foundation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보고서’에서 EU가 아동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라고 지목함

○ 게다가 암호화된 그룹채팅과 거래 등(end-to-end encryption)이 활성화되면서 성범죄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 독일에서는 그룹챗을 활용한 성범죄 혐의자가 3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특정된 혐의자는 72명, 피해자는 44명에 불과하였음⁷⁹⁾

78) European Commission, EU Strategy for a More Effective Fight Against Child Sexual Abuse, COM(2020) 607 final, 2020. 7. 24.

79) BBC, Germany investigates 30,000 suspects over paedophile network, 29 June 2020; Frankfurter Allgemeine, Die schockierende Zahl des Tages: 30.000 Verdächtige, 29 June 2020

○ 유럽연합은 2011년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법체계로서 최소한의 형벌과 제재를 정한 ‘아동 성적 학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아직 회원국들에서 온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음(네덜란드, 아일랜드, 사이프러스와 동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덴마크를 제외한 23개국이 모두 법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임)

○ 회원국별로 ‘아동’의 연령상한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고, 규제의 수준도 다른 상황이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성범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통적인 법률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회원국의 입법 현황⁸⁰⁾

○ 유럽 이사회(Council of Europe)에서 5가지 기준으로 아동의 성적 학대와 관련해 회원국의 입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수대별로 다음과 같이 분포하여 있음

○ 5가지 기준

- 아동 성적 학대물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아동 성적 학대물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는가?
- 기술적 설비를 통한 아동 성적 학대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가?
- 유통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아동 성적 학대물을 인지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가?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로 하여금 의심되는 아동 성적 학대물을 법 집행기관 등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가?

○ 국가별 분포

- (5점)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80)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 Responses to Prevent and Combat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019. 11., p. 27
<https://rm.coe.int/191120-baseline-mapping-web-version-3-/168098e109>

- (4점)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몰도바공화국, 모나코,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로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3점) 터키, 슬로베니아, 산 마리노, 러시아연방, 포르투갈, 폴란드,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체코공화국, 룩셈부르크

- (2점)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 (1점) 없음

3. 아동 성적학대에 관한 지침 (Child Sexual Abuse Directive, 2011/93/EU)⁸¹⁾

가. 개요

○ 본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성 학대에 관해 최소한의 형벌과 제재를 정한 것으로서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을 해야 효력을 발휘함

○ 아동의 연령에 대해 회원국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별 조문 별로 연령과 관련된 상세한 참고사항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실지 않음

나. 정의

○ ‘아동’은 만 18세 이하의 자를 말함

○ ‘아동 포르노그래피’란 (i) 아동이 노골적인 성행위에 실제 관여하거나 이를 모방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매체, (ii) 성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의 성기를 묘사하는 것, (iii)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행위에 실제 관여하거나 이를 모방하는 것을 시

81) Directive 2011/9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OJ L 335, 17.12.2011.

각적으로 묘사한 매체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의 성기를 묘사하는 것, (iv) 노골적인 성행위에 아이가 연루한 것을 사실적으로 담은 이미지(realistic image)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담은 이미지를 의미한다.

○ ‘포르노그래피 공연(pornographic performance)’은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i) 어린이가 노골적인 성행위에 실제 관여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ii)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의 성기를 실시간으로 전시(a live exhibition)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성적 학대(sexual abuse)에 관한 범죄

○ 아동이 성적인 목적으로 성행위(sexual activities)를 목격하게 하는 것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며 성적 학대(sexual abuse)를 목격하게 하는 것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여야 함

○ 아동이 성행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 신뢰관계나 아동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에 기초하여 아동을 성행위에 관여시킨 경우 또는 해당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 강압, 협박 등을 통해 아동을 성행위에 관여시킨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라. 성적 착취(sexal exploitation)에 관한 범죄

○ 아동을 포르노그래피 공연을 위해 채용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것, 또는 아동을 그러한 방식으로 착취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며, 여기에 강압 또는 강요가 활용된 경우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 아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르노그래피 공연에 참여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 아동을 성매매를 위해 채용하거나 이를 유발한 사람은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며, 여기에 강압이나 강요가 활용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마.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

○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습득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징역에 처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당 매체가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접근을 한 사람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배포, 유통, 전송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공급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며 제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바.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범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거나 어른이 아동을 만나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거나 아동을 노골적인 성행위에 관여시킬 목적으로 제안을 하고 실제 만남 등의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함

사. 동의에 기반한 행위의 예외

○ 아동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성행위를 목격시키는 것, 성행위에 관여시키는 것, 포르노그래피 공연에 참여하는 것,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할 지 여

부는 회원국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음

아. 법인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상기의 행위에 관여된 경우 회원국은 책임자를 법인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거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형사적, 비형사적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공공 재정지원의 배제, 상행위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금지, 사법적 감독, 법인설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자. 기타

○ 회원국은 수사에 협력해야 하고, 상호 수사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를 교육하고, 아동 피해자를 공동으로 지원해야 함

4.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인터넷을 위한 유럽 전략

○ 이 전략은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을 촉진하고 어린이를 위한 긍정적인 온라인 경험을 촉진함

○ 모든 EU 학교에서 디지털 문맹 퇴치 및 온라인 안전 교육을 포함하여 인식 및 권한을 확대하고, 연령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설정, 자녀 보호 기능의 폭넓은 사용, 연령 등급 및 콘텐츠 분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아동성적 학대 자료 및 아동 성적 착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 휴대 전화 사업자, 핸드셋 제조업체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를 결합하여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인터넷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

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촉진

-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 촉진
-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온라인 경험 장려

나. 인식 및 권한 강화

-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능력 및 학교에서의 온라인 안전 교육
- 인식 활동 및 청소년 참여 확대
- 사용자를 위한 간단하고 강력한보고 툴

다.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연령에 적합한 개인 정보 보호 설정
- 자녀 보호 기능의 더 넓은 가용성 및 사용
- 연령 등급 및 콘텐츠 분류 사용 확대
- 온라인 광고 및 초과 지출

라. 아동 성적 학대 및 아동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우기

-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포된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자료의 알림 및 게시 중단

- 아동 성적 학대 및 아동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

5. 자율 규제

-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동맹

- 미성년자에게 얼라이언스 온라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자기 규제 이니셔티브

- 자녀 보호, 콘텐츠 분류 및 온라인 안전을 위한 기타 도구의 강화 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자 권한 부여. 보고 도구는 보다 접근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또한 피드백 및 알림과 같은 후속 조치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업은 NGO, 시민 사회, 유럽, 국가 및 지방 당국 및 국제 조직의 관련 의견을 고려하여 협력과 모범 사례 공유를 강화

- Alliance 회원은 인지도 제고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 긍정적이고 교육적이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장려하고 향상시키려 함.

- 인터넷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CEO 연합

- CEO 연합은 2011년 12월 출범⁸²⁾

- 미성년 유럽인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

- 인터넷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 이 연합에 가입한 회사들은 2012년 사용자를 위한 간단하고 강력한보고 툴, 연령에 적합한 개인 정보 보호 설정, 콘텐츠 분류의 폭 넓은 사용, 자녀 보호 기능의 더 넓은 가용성 및 사용, 아동 성적 학대 자료의 효과적인 게시 중단의 5개 분야에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82) 서명서에 서명한 회사는 Apple, BSKyB, BT, Dailymotion, Deutsche Telekom, Facebook, France Telecom-Orange, Google, Hyves, KPN, Liberty Global, LG 전자, Mediaset, Microsoft, Netlog, Nintendo, Nokia, Opera Software, Research In Motion, RTL Group, 삼성, Skyrock, Stardoll, Sulake, Telefonica, TeliaSonera, Telecom Italia, Telenor Group, Tuenti, Vivendi 및 Vodafone가 있다.

○ 더 안전한 소셜 네트워킹 원칙

- 더 안전한 소셜 네트워킹 원칙은 2009년 2월 10일, 유럽에서 활동하는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명한⁸³⁾ 자체 규제로 총7가지 원칙으로 구성.

- 이 원칙은 2008년 Social Networking Task Force의 결과로 유럽의 주요 소셜 네트워크 중 18개와 연구자 및 아동 복지 기관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논의하여 유럽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할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일련의 지침을 개발

- 이 원칙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잠재적인 온라인 위협을 아동 학대 이미지 및 불법적인 증오심 표현과 같은 '불법 콘텐츠', 포르노, 성적인 콘텐츠, 폭력 또는 기타 '연령에 부적합한 콘텐츠'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 할 수 있는 성인용 주제의 콘텐츠, 성적인 관심을 가진 성인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된 '접촉', 다른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행동'⁸⁴⁾으로 분류.

○ 청소년과 어린이의 안전한 모바일 사용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European Framework)

- 유럽의 모바일 제공 업체 및 콘텐츠 제공 업체는 2007년 2월 청소년 및 어린이를 포함한 안전한 모바일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여 대부분의 EU회원국을 포함.








83) ARTO, Bebo, Dailymotion, Facebook, Google, Hyves, Gruppo SMB, Microsofts, News Corporation (on behalf of MySpace), Fox Interactive Media UK Ltd, nasza-klasa.pl, Netlog, ONE.LT, Business Development & Marketing, Stardoll Skyrock, Studivz, Sulake Corporation Oy, Yahoo! UK and Ireland, Zap.lu, Rate.ee, Tuenti, Adiconsum, BBC, Childnet International, e-enfance, IAB Europe, Internet Solutions for Kids, Save the Children Denmark, UK's Children's Charities' Coalition on Internet Safety, University of St Gallen, Vodafone

84) 괴롭힘이나 피해자화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행동, 사회적 그룹화 등) 및 잠재적으로 위협한 행동 (예를 들어 개인 정보 유출, 성적으로 도발적인 게시사진, 실제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성적 그루밍 등)

- 서명한 콘텐츠 제공 업체의 지원을 받는 서명한 유럽 모바일 공급자는 이를 반영하고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가보다 안전한 모바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EU 전역 공통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고 있음.

- 이 유럽 프레임워크 중 모바일 커뮤니티 제품 또는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모바일 제공업체는 지속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법적의무를 지고, 불법 아동 이미지 처리에 있어 국가 당국을 지원, INHOPE 핫라인 네트워크 또는 이와 동등한 접근 방식을 통해 모바일 커뮤니티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대한 알람을 하도록 함. 유럽의 모바일 제공 업체 및 콘텐츠 제공 업체는 청소년 및 어린이를 포함한 모바일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 이니셔티브를 개발

[그림 3-1]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WeProtect Global Alliance 모델

Enablers	Capabilities		Outcomes	
Cross sector,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Policy and Governance	1 Leadership: An accountable National Governance and Oversight Committee	Highest level national commitment to CSEA prevention and respons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SEA within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Willingness to work with, and co-ordinate the efforts of, multiple stakeholders to ensure the enhanced protection of victims and an enhanced response to CSEA offending.
		2 Research, Analysis and Monitoring National situational analysis of CSEA risk and response; measurements/indicators		
		3 Legislation Comprehensive and effective legal framework to investigate offenders and ensure protection for victims		
Willingness to prosecute, functioning justice system and rule of law	 Criminal Justice	4 Dedicated Law Enforcement: National remit, trained officers, proactive and reactive investigators, victim-focu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Effective and successful CSEA investigations, convictions and offender management	Law Enforcement and judiciary have the knowledge, skills, systems and tools required to enable them to perform victim-focused investigations and secure positive judicial outcomes. CSEA offenders are managed and reoffending prevented.
		5 Judiciary and Prosecutors: Trained, victim focused		
Supportive reporting environment	 Victim	6 Offender Management Process: Prevent re-offending of thos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ppropriate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Children and young people have access to services that support them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them. They have access to shelter; specialised medical and psychological services; and rehabilitation, repatriation and resocialization services.
		7 Access to Image Databases: National database, link to Interpol database		
Aware and supportive public and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Societal	8 End to End Support: Integrated services provided dur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after-care	CSEA prevented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informed and empowered to protect themselves from CSEA. Parents, carers, teachers and childcare professionals are better prepared to keep children safe from CSEA, including addressing taboos surrounding sexual violence.
		9 Child Protection Workforce: Trained, coordinated and available to provide victim support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Industry	10 Compensation, remedies and complaints arrangement: Accessible procedures	Industry engaged in developing solutions to prevent and tackle CSEA	Industry has the power and willingness to block and remove online CSEA content and proactively address local CSEA issues. Industry proactively reports online CSEA.
		11 Child Helpline: Victim reporting and support, referrals to services for ongoing assistance		
National legal and policy frameworks in accordance with the UNCRC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andards	 Media and Communications	12 CSEA Hotline: Mechanism for reporting online CSEA content, link to law enforcement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Awareness raised among the public, professionals and policy makers	Potential future offenders are deterred. CSEA offending and reoffending is reduced.
		13 Education Programme: For children/young people, parents/carers, teachers, practitioners, faith representatives		
Data and evidence on CSEA	 Universal Terminology	14 Child Participation: Children and young people have a voice in the development of policy and practice		
		15 Offender Support Systems: Medical, psychological, self-help, awareness		
		16 Takedown Procedures: Local removal and blocking of online CSEA content		
		17 CSEA Reporting: Statutory protections that would allow industry to fully and effectively report CSEA, including the transmission of content to law enforcement and another designated agency		
		18 Innovative Solution Development: Industry engagement to help address local CSEA issues		
		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ffective child focused programme		
		20 Ethical and Informed Media Reporting Enable awareness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problem		
		21 Universal Terminology Guidelines and application		

제 3 절 일본

1. 개요

○ 일본은 망가, 로리콘 등 아동과 관련된 성적인 표현에 관대한 문화와 직접적인 콘텐츠 및 사업자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라는 인식이 있어 기술적·사회적 지원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의 인터넷 규제 법률을 제정

○ 일본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관련 법령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환경 조성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교육 시행 관련 내용이 규정

○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필터링과 같은 수단의 활용과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민간 단체 및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대응을 강조

○ 하지만 일본이 아동포르노그래피 생산의 허브라는 국내외적 비판이 강화되면서 1999년 ‘아동 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과 유통을 형벌로 규제하기 시작함

○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나 2014년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최종적으로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진, 비디오레코딩만을 규제하여 소설, 망가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⁸⁵⁾

2. 아동 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처벌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86)

85) Melissa Hellman, Japan Finally Bans Child Pornography, Time, 2014. 6. 18. <https://time.com/2892728/japan-finally-bans-child-pornography/>

86) Act on Punishment of Activities Relating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가. 정의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함

○ “아동포르노그래피”란 사진, 전자적(電磁的)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氣的)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시각에 의하여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계되는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을 말함

①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

② 타인이 아동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③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아니한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나. 처벌 규정

○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공급하는 사람 또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아동이 성기에 접촉하는 행위 등의 자태를 묘사한 기록 또는 전자기적 기록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공급하기 위해 이를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전송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불특정한 사람에게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공급하거나 일반 공중에게 전시한 사람은 5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No. 52, 1999. 5. 26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_main/?printID=&ky=work&re=02&page=18&vm=03&id=10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자기적 기록을 제공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의 규정이 적용됨

○ 불특정한 사람에게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공급하거나 일반 공중에게 전시하기 위해 이를 제작, 소지, 전송, 일본으로부터 수출하거나 일본으로 수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자기적 기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규정이 적용됨

다. 면책 규정

○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으나, 무과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됨

라. 아동관련 방송출판의 금지

○ 아동 관련 성범죄 사건에 관련된 아동들은 기사, 사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이름, 나이, 직업, 학교, 거주지, 외모 등의 개인적 특징이 드러나도록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신문 등의 출판물에 등장하거나 방송되어서는 안됨

3.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본 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및 성적 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을 고려함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을 규제하며 혹은 이러한 행위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등을 정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⁸⁷⁾

87) 平成十一年法律第五十二号,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一条

-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

- 청소년 유해정보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 및 범법행위에 관한 내용, 성적으로 음란하거나 자극적인 내용, 살인 및 학대 등 현저하게 잔혹한 내용 등을 의미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모바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 의무 부담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의무 부담

- 서버 관리자는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외부로부터 신고 접수 체계의 정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총무성이나 경제산업성에 등록된 민간단체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단체 및 사업자들에 대한 지적·재정적 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의 법적 권한이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제도적 지원으로 한정됨

-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관련 범죄는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라 처벌되며 아동포르노를 제조·소지·운반·수입·수출한 사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한화 약 3,393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아동포르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진열한 사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불특정한 다수에게 이와 같은 음란물을 유포 및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한화 5,655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함⁸⁸⁾

제 4 절 영국

1. 개요

○ 영국은 인터넷 내용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청소년이 부적절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개인이나 가정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가정이나 학교차원에서 지도되고 있음

○ 그러나, 성인물에 대해 관대한 영국에서도 성적 아동학대 음란물(아동포르노)나 인종 차별 등 과 관련해서는 형사제재가 가해짐

2.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⁸⁹⁾

가. 정의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이 법률에 따른 범죄는, (a) 아동의 선정적인 사진 또는 유사사진(pseudo-photograph)⁹⁰⁾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도록 허용하거나 제작하는 행위, (b) 그러한 선정적인 사진 또는 유사사진을 배포하거나 상영하는 행위, (c) 자신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

88)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2020.06.23.,

http://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930&AST_SEQ=3891&ETC=30, 마지막방문일 2020.08.13.

89) Protection of Children Act(1978, 2015/5/3 개정 내용)

90) 아동 포르노그래피의와 아동의 성적 착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78년 제정된 법률로서 초기에는 “사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4년 컴퓨터를 통해 제작되거나 변조된 이미지가 포함하기 위해 “유사-사진”이라는 개념이 포함됨

해 선정적인 사진 또는 유사 사진을 소지하는 행위, (d) 선정적인 사진 또는 유사사진을 보여주거나 배포할 것이라고 이해되는 광고를 출간하거나 출간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말함

○ ‘사진’에는 영상, 네거티브 사진, 컴퓨터 디스크에 보관된 데이터나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미지로 변환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며, 다른 사진 또는 유사사진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병합해 전자적 수단 등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포함됨

○ ‘유사사진’이란 컴퓨터 그래픽 등의 수단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말함

○ 유사사진 상의 사람이 아동처럼 보이는 경우, 즉 어른이라고 보여지는 육체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 경우 이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됨⁹¹⁾

나. 처벌규정

○ 본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는 약식 또는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약식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식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짐

다. 면책규정

○ 만약 사진 또는 유사사진을 배포하거나 보여주거나 소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사진을 보지 않았거나 사진이 선정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에

91) If the impression conveyed by a pseudo-photograph is that the person shown is a child, the pseudo-photograph shall be treated for all purposes of this Act as showing a child and so shall a pseudo-photograph where the predominant impression conveyed is that the person shown is a child notwithstanding that some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shown are those of an adult.

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만약 해당 사진 또는 유사사진의 제작, 촬영, 배포, 소지 당시에 아동이 만 16세 이상이고 피고인이 아동과 결혼하였거나 동성혼 관계(civil partners of each other)이거나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구성하는 파트너로서 동거하고 있었고, 아동과 피고인 외에 제3자를 사진에 등장시키지 않았으며, 아동이 사진의 제작, 촬영, 배포, 소지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했으리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신뢰가 있었고, 아동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음.

○ (i) 범죄를 방지하거나 조사하거나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ii)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iii) 정부정보통신부(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가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사진 또는 유사사진을 제작한 경우는 면책될 수 있음

3.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 2003)」

○ 제15조 ‘성적 그루밍 등 이후 아동과 만남’과 중범죄 법(The Serious Crim Act, 2015)의 새롭게 신설된 제15A조항 ‘아동과의 성적 대화’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 아동을 어느 곳에서든 의도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불순한 목적으로 여행을 했거나, 만남 당시 이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개정 전 제15조는 성인과 아동이 떠난 유형으로든 간에 만남이나 의사소통을 가진다면 그것이 어느 국가이고 어떤 접촉 유형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성적 그루밍을 통한 만남으로 해석되기 충분하다고 보고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성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남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신뢰와 신뢰를 얻는 과정을 가진다면 성범죄 법 제15조항에 의거 처벌 가능

○ 결국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가 반드시 나타나야하는 것은 아니나 아동과 성인간의

직접적 만나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온라인상 그루밍 관련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 보완하기 위해 제15a조를 신설

○ 본 조항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화 모두 처벌 가능하며 노골적 성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만족감이 목적이었다면 대화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직접적 대화, 이메일, 문자와 같은 것 등 모두 적용 가능

4.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 국민과 기업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 디지털통신인프라 투자 촉진, 스팸메일·음란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 아동, 소비자 및 기업의 이익을 위한 디지털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전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4월 27일 제정

○ DEA는 SNS 등을 사이버 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온라인 불링(Bullying)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온라인 음란물 제공자들은 온라인 음란물이 오직 18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연령확인 규제기관(age-verification regulator)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령확인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하는 음란물 제공자는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영국 영화등급분류위원회(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는 해당 온라인 음란물에 대하여 게재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함.

5.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

○ 2000년 12월 통신백서(the Communications White Paper-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Cm 5010))가 발표, 이 백서의 제시 방향 및 내용이 중심으로 한 2003년 7월 17일 새로운 법이 제정 됨

○ 2002년 3월에 제정 된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에 기해 설립을 준

비 중이던 OFCOM⁹²⁾은 Communication Act의 제정과 함께 이에 근거하여 본격적 활동

○ OFCOM BROADCASTING CODE는 총 1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① 18세 미만의 자는 보호되어야 함 (시간대와 내용정보, 약물·흡연·solvent·알콜, 폭력과 위협 행위, 공격적 언어, 성(Sex), 노출(Nudity) 등을 규정), ② 유해성과 폭력성, ③ 범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6. 자율규제 등

○ 마리 콜린스 재단은 국가가 CSEA(아동 성 착취 및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도움이 되는 GPON(Global Protection Online Network)프로그램을 개발

- 영국 정부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의 신원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성학대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Child Abuse Image Database, CAID)의 업그레이드를 발표

- 아동 성학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3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할당하는 등 아동 성학대 문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 중

- 온라인 아동 성학대 해결 방법 논의를 위한 런던에서 열린 다섯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장관 회의를 함

- 본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및 서비스에 아동 성 학대 관련 자료의 시청, 공유 등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

- 2015년 10월, 온라인에서 아동과 관련한 성적 이미지를 보는 것을 막고 관련 범죄자들의 행동 교정을 위해 도움을 주는 STOP IT NOW 억제 운동을 실시

92) OFCOM은 영국의 방송·통신·우편 산업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 Act)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에 신설되어 기존의 통신위원회(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FTEL),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 방송기준위원회(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BSC), 무선통신국(Radiocommunications Agency, RA),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 RA) 5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 영국은 인터넷 규제는 ISP나 이용자들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 규제가 원칙이며 중심적인 자율규제기구로는 IWF가 있음

- 1996년 설립된 비영리기구 IWF는 'hotline'을 통해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나 아동을 악용하는 영상물은 IHPA(Internet Hotline Providers Association)와 협조하여 해외의 것이라도 필요 조치를 취함

- 아동의 외설적인 이미지를 묘사한 모든 웹 페이지의 세부 정보는 추가 조사를 위해 전 세계의 법 집행 기관 또는 핫라인 파트너에게 전달하여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및 동영상 삭제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

○ ISPA-UK(인터넷서비스프로이더협회)

- 1995년 ISPA-UK는 경쟁, 혁신, 자율 규제 및 인터넷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영국의 무역 협회

- ISPA UK 행동규범에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본 협회 회원 스스로가 영국법에 위반하는 성적 아동학대 음란물, 폭력·잔학행위, 인종차별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규정되어 있음

- ISPA-UK회원이 반드시 IWF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IWF로부터 성적 아동학대 음란물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받는 경우 ISPA-UK의 회원으로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함

○ NPSCC(아동학대방지협회) 및 UKCCIS(영국 아동 인터넷 안전 협의회)

- NPSCC는 경찰조직 CEOP(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와 연동한 NGO단체로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 활동을 함.

- UKCCIS는 정부, 산업, 법률, 학계 및 자선 부문 등 20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 유지를 위해 협력

- UKCCIS는 선도적인 기술 회사의 모범 사례와 NGO 및 기타 온라인 아동 안전 전문가의 조언이 포함된 소셜 미디어 및 대화형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가이드 통해 기업이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플랫폼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

제 5 절 독일

1. 개요

○ 독일은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규제 시스템이 잘 정비된 국가

○ 연방법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주법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음

○ 자율규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정부의 감시 및 관리 권한이 비교적 강한 형태의 자율 규제 시스템

2. 형법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음란물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허용,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강력하게 규제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형법 제184조), 폭력 행위 및 수간 행위 묘사물(형법 제184 a조)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 윤리를 해하기 때문에 금지

○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실제 성적 학대 및 추행 행위에 대한 묘사 뿐만 아니라 비강제적인 음란 행위 묘사도 처벌,

○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의 배포, 구매 및 소지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형법 제183b, c, d조)

○ 온라인 그루밍에 대하여는 형법 제176조⁹³⁾ 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93) 독일 형법 제176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4세 미만의

면에서 그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아동과의 어떠한 성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적 위협과 성적 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함

○ 또한 2015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문서, 정보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미디어 또는 문서를 통해 접촉하는 준비행위도 처벌함, 이는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을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함임⁹⁴⁾

○ 정보 및 통신기술은 온라인상의 대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쪽지,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루밍은 아동과의 접촉을 통해 신뢰관계를 얻는 유인 과정이므로 대화의 내용에 반드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음

3.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

○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 법 적용 대상은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정의

사람(아동)에 대해 성적 행동을 하거나 행위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한 자, 아동이 제3자에게 성적행동을 하거나 제3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도록 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자, 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자, 문서 또는 정보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이 행위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내용을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하거나 알선할 것을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를 하기로 음모한 자도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4) 원혜옥, 홍민지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137면.

○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미디어 및 텔레미디어를 청소년 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하고, 청소년유해 목록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부도덕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폭력·범죄·인종 간 증오 행위를 선동하며 살인과 같은 폭력행위나 구타 등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묘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

4. 「인터넷접근제한법(Zugangerschwerungsgesetz, ZugErschwG)」 - 폐지

○ “아동에 의한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묘사물”(아동포르노그래피)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나 폐지됨

○ 연방 형사경찰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사이트의 목록을 형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적절한 시간 내에 사이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독일 ISP는 DNS 포이즈닝 기술 등을 활용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음

○ 2008년 가족부 장관인 Ursula von der Leyen에 의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가 정부와 자율규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09년 연방의회가 인터넷접근제한법을 통과시켰고, 위헌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졌으며 시민당에서 자유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당 법률을 집행하지 않기로 함. 2011년 정부는 법률 전체를 백지화하기로 하였고 폐지법률안이 2011년 12월 의회를 통과함

5.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 방송국 및 텔레미디어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

○ 콘텐츠 공급자는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접근 차단 조치를 해야 하고, 차단조치에는 ‘기술적 차단조치’와 ‘시간제한조치’가 있으며, 16세 이상 이용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콘텐츠 제공가능시간은 23시 -6시까지이며,

16세 미만 아동 이용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22시- 6시까지임

○ 콘텐츠 공급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여야 함

○ 해당 소프트웨어는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관할 주 미디어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음

6. 「미디어 주간 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

○ 2018년 주정부총리회의는 기존 방송주간협약의 한계를 넘어 미디어 전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미디어 주간 협약’(Medienstaatsvertrag)을 발표하였고 공개토론을 거쳐 2020년 각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음

○ 미디어주간협약은 그 적용대상을 넓혀 기존 방송주간협약이 규정하고 있던 방송, 전자매체인 텔레 미디어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매체로 한정하고 있던 것에서 접근 가능성, 사용자인터페이스, 미디어중개자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방송에 대한 개념도 재정의하여 온라인방송사업자들, 개인콘텐츠제작자들도 규제안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미디어중개자’ 관련 조항을 신설, 미디어중개자를 ‘저널리즘-편집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보, 뉴스 등을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전자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포털, 사용자생성콘텐츠 포털, 블로그 포털, 뉴스 제공 웹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됨

○ 청소년 보호 부문도 개정이 검토되었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텔레미디어 규정, 청소년보호에 포함되는 매체 기준 검토, 영화·텔레비전조정기구와의 협력강화, 프로그램등급제 유지 등 미디어콘텐츠 평가의 법적 일관성 확보
- ②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 현대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미디어보호기준 정비
- ③ 콘텐츠 불만처리, 유해사이트 목록 관리 및 색인 구성, 절차간소화 등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과 인간존엄 보호를 위한 주간협약(Staatsvertrag uber den

schutz der menschenwu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이하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 정비 등

○ 다만 청소년보호/청소년미디어보호와 독과점법/다양성보호 부분은 타법개정까지 논의되어야 하기때문에 미디어주간협약에서 제외되었음⁹⁵⁾

95) 독일의 미디어주간협약 도입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 71면.

제 6 절 호주

1. 「온라인안전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 호주 사회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괴롭힘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2013년 9월 타즈메니아주에서 15세 여학생의 자살, 2013년 4월 시드니에서 13세 여학생 자살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위한 온라인 안전위원회(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가 설립 됨

○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서비스의 온라인콘텐츠제도법(Online Content Scheme in the Broadcasting Service Act 1992)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게임, 동영상, 온라인 출판물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2.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률(Comba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 개정)」

○ 2018, 증가하는 아동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연방경찰 주도로 아동성착취대응 센터(ACCCE)를 설립

○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하여 연방, 각 주정부, 비정부기관, 주요 민간 산업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아동성착취 예방, 신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업하고 있음

○ 아동성착취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는 온라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13년 이후 아동의 모습을 한 성인용전신인형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호주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추진 중이며 법률에 아동성착취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아동성범죄의 범위 확장 및 디지털아동성학대와 관련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성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감시체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호주 연방, 경찰,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⁹⁶⁾

○ 아동성착대 감시체계, 아동형상의 성인용 인형, 아동성학대 자료, 호주외의 거주아동, 아동과의 강제결혼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범죄법, 형법, 관세법 등의 법률 개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표 3-3>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주요내용

구분	법안목록	내용
아동성학대 감시체계	「범죄법」, 「형법」 등	연방공무원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신고·감시,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 인형	「범죄법」, 「형법」, 「관세법」 등	아동형상의 성인용진신인형(Childlike Sex-Doll) 수입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
아동성학대 자료	「형법」 등	소지·유통 :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입수·접근하여 아동 학대 자료를 소지 또는 통제하는 경우 처벌
	「형법」 등	정의규정 :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를 ‘아동 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로 변경
호주외의 거주아동	「형법」 등	호주외 거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처벌 강화
아동과의 강제결혼	「형법」 등	16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 금지와 처벌 강화

출처 : 전윤정,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5면

96) 전윤정,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3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4면.

○ 주요 개정 내용에는, 아동성학대 자료 소유·통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컴퓨터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에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소지, 통제하는 경우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등 개정

○ 또한, 호주 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거나 호주 외에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위한 아동 매수 또는 유인(grooming)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하였으며, 그동안 호주의 범죄법, 형법, 통신(차단 및 접근)법 등 각종 법률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라는 용어를 ‘아동 학대 물(child abuse material)’로 변경하고 정의조항들을 재구성할 것을 명시

3.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

○ 호주 행정부 18개 부 중 ‘통신과 예술부(Communications and the Arts)’에 속해 있는 인터넷 안전위원 사무실의 전신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은 2015년 7월 1일 업무 시작

○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안전 강화 개정 법안 2017’이 같은 해 6월 23일에 의회를 통과해 발효됐고, 이 법에 따라 어린이 인터넷 안전위원이 활동을 끝내고, 인터넷 안전 위원으로 명칭을 바꿈

○ 인터넷 안전위원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C) 하위의 독립 법정 기관으로서 호주 어린이,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정보를 취득하여 심리를 여는 것도 가능

○ 현재 호주 정부는 2018년 인터넷 안전 위원이 전국 온라인 고충처리 및 신고 포털을 구축하여 이미지 기반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480만 호주 달러 예산을 투입했으며, 관련 피

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 호주 달러를 예산에 투입

4. 뉴사우스웨일즈의 아동보호자법(Children's Guardian Act 2019, No.25)

○ 2019년 개정된 아동보호자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그루밍 행위를 아동 성범죄(sexual offence)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NSW Children's Guardian Act 2019, 제21조 제2호), Crimes Act 1900 제66EB조에서 이러한 행위, 즉 16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하거나 그루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14세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15년, 그 외에는 12년의 구금형을 규정하고 있음⁹⁷⁾

97) 윤정숙·이태현·김현숙,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103-104면.

제 7 절 캐나다

- 캐나다 형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및 아동 착취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지조항을 두고 있음
- 아동 음란물 소지, 접근, 제작 및 배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 음란물
- 성범죄 또는 유괴 범죄를 위하여 해당 아동을 유인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의사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 캐나다인이 국내 및 해외에서 저지른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등
- 매춘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성행위를 위한 아동의 제공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출간, 출가 목적 소지 시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송, 배포, 판매, 광고, 수입, 수출 및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 또는 접근 시에도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4년부터 인터넷의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조사하고 추적하는 국가 역량의 향상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공공 교육 및 인식 제고를 꾀하며, 이를 위한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음
-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에서 운영하는 Cybertip.ca는 아동의 온라인 성적 착취에 관한 활동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자료에 대한 신고를 받아 관계 기관 및 아동 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이를 처리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함
- 2020년 3월 5일, 아동에 대한 온라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5개의 업계

대표 그룹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개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자발적 원칙을 발표함

○ 이는 정부, 산업 및 기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부문 간 협력을 통하여 아동의 성적 학대 자료의 공유 및 시정을 막음으로써 자녀를 온라인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세계 공동체가 기대하고 가치 있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달성하고자 함, 이 원칙은 온라인 아동의 성적 착취와 학대에 맞설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집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이 원칙은 먼저 아동 성학대 자료의 방지를 위하여 아동 성적 학대 자료가 사용자에 게 제공되거나 플랫폼 및 서비스에서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아동 성 학대 자료의 보급을 식별하고 퇴치하고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예비 아동 성적 착취 및 학대 활동 (예 : 아동 성적 학대를위한 온라인 그루밍)와 성 착취 또는 학대를 위해 아동을 모집, 권유 또는 조달하는 등의 행위도 식별과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 외에도 이러한 자발적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과 데이터 및 도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등의 기업의 노력도 포함하고 있음

1. 「형법전」 제163.1조제(3)항⁹⁸⁾

○ 아동음란물의 전송·이용·배포·판매·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를 전송, 이용, 배포, 광고, 수출입, 소지하는 자들은 기소되며 최소 1년에서 최대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⁹⁹⁾

98) §163.1(3) (Distribution, etc. of child pornography) Every person who transmits, makes available, distributes, sells, advertises, imports, exports or possesses for the purpose of transmission, making available, distribution, sale, advertising or exportation any child pornography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14 years and to a minimum punishment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99)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

2. 「지역사회와 착취 피해자 보호법(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 미성년자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아동보호 규정 강화 법률을 제정함.

○ 2005년과 2014년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성 구매자의 경우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¹⁰⁰⁾

3. 그 외

별 규정', 2020.06.23.,

http://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8930&AST_SEQ=3891&ETC=30, 마지막방문일 2020.08.13.

100)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10., 69면.

[그림 3-2] 일부 국가의 국가법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법적 제재 관련 평가 결과

국가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률 존재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와 상관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대한민국	×	×	×	×	✓
말레이시아	✓	✓	✓	✓	✓
미국	✓	✓	✓	✓	✓
싱가포르	✓	×	✓	×	✓
아일랜드	✓	✓	✓	✓	✓
영국	✓	✓	✓	✓	✓
인도	✓	✓	✓	✓	✓
일본	×	×	×	×	×
중국	×	×	×	×	✓
캐나다	✓	✓	✓	✓	✓
터키	×	×	×	×	✓
포르투갈	✓	✓	✓	✓	✓
호주	✓	✓	✓	✓	✓

출처: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Virginia: The Koons Family Institute on International Law & Policy.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 63개국 중 다섯 가지 평가 사항¹⁰¹⁾을 모두 만족하는 24개국 중 한 곳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음¹⁰²⁾

○ OTTAWA-캐나다 대법원은 인터넷 유인 금지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잠재적 범죄자들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함. 32세 남성이 12세 소녀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인터넷 채팅을 한 사안에 대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온라인(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심사 또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여 신뢰를 얻음으로써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그루밍”한다며 본 사안의 판결을 내린 판사는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라 이 대화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향후 범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말함¹⁰³⁾

○ 2004년에 시작된 인터넷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grooming하는 가해자를 조사하고 추적 및 공공 교육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아동 성착취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원함.

○ 2007년에 구현된 Project CleanFeed는 Cybertip.ca와 캐나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간의 파트너십인데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에 대한 우발적인 접근을 줄이고 접근 또는 배포하려는 자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Cybertip.ca는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와 관련된 특정 외국 호스팅 인터넷 주소의 정기적 업데이트 목록을 유지함. 파트너십에 있는 ISP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목록이 제공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자동으로 거부함. 이러한 유형의 협력은 미국 전역의 산업, 법 집행 기관, 정부 및 비정부

101) ① 성적인 목적을 위한 아동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률의 존재 여부 ②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정의 제공 여부 ③ 오프라인 상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 유무 ④ 오프라인 상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와 상관없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여부 ⑤ 아동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처벌 여부

102) 이수정,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 분석과 범·제도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10.31., 126면.

103) Tonda MacCharles, “Online 'grooming' of kids ruled a crime”, THE STAR, 2009. 12. 04.,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09/12/04/online_grooming_of_kids_ruled_a_crime.html,

마지막방문일 2020.08.14.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인 CCAICE(Canadian Coalition Against Internet Child Exploitation)을 통해 지속되며 온라인 아동 착취의 영역과 협력 솔루션을 개발함.¹⁰⁴⁾

제 4 장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 방안

제 1 절 정보통신망법 제41조에 따라 음란, 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가.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규제 방안 도출 검토

○ 청소년유해정보가 웹사이트나 카페 등과 같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비공개된 형태로 아동·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할 시책은 다음과 같음

104) Public Safety Canada, “Child Sexual Exploitation on the Internet”, 2020.03.12., <https://www.publicsafety.gc.ca/cnt/cntrng-crm/chld-sxl-xplttn-ntrnt/index-en.aspx>, 마지막방문일 2020.08.14.

<정보통신망법 상 제41조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시책>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시책>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 청소년유해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서비스’ 제도가 있으며, 이 서비스에는 자율등급표시, 제3자등급표시, 필터링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음

- (자율등급표시) 정보제공자가 공시된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콘텐츠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설립한 사이트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노출과 폭력, 성행위, 폭력, 욕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의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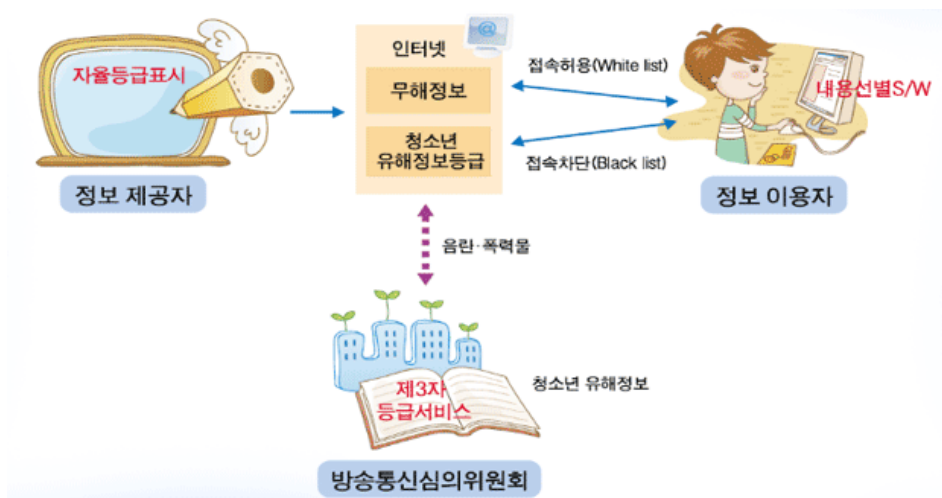
- (제3자등급표시) 제3자등급표시는 제3자, 즉 관련 인증기관이 해외의 음란·폭력물 등의 인터넷 유해정보에 등급을 표시,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내용선별소프트웨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필터링소프트웨어라고도 하며,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한 등급정보나, 제3자가 매긴 등급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여 정보

이용자들이 설정한 등급에 따라 내용을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자녀의 PC에 설치하면, 자녀들이 성인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 줌.

-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필터링소프트웨어가 유·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필터링소프트웨어는 청소년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온갖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망이라 할 수 있음

[그림 4-1] 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 서비스 구성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제는 정보제공자, 심의기관, 이용자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동규제에 해당하며, 자율등급표시와 제3자등급표시가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점에서 그 대상이 컴퓨터 등 단말기라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르면, 「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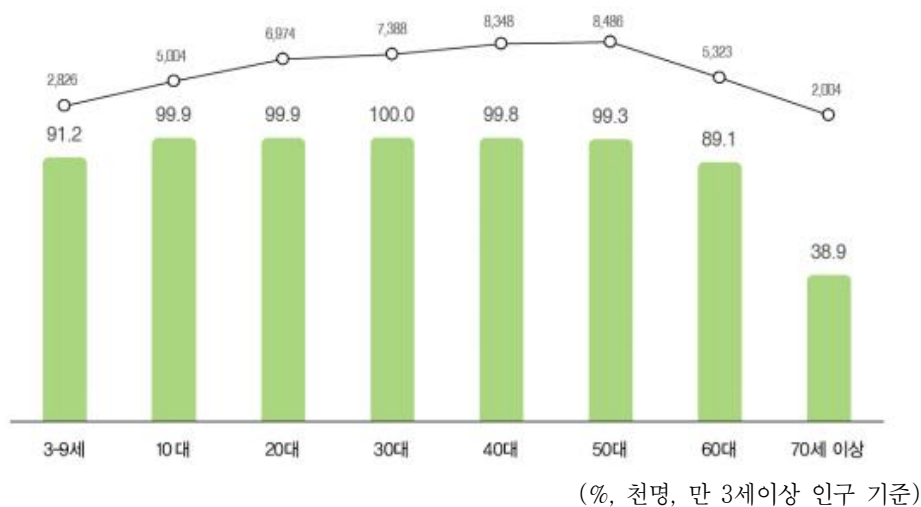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 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2014. 9.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4.부터 청소년이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

- 이동통신사는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차단수단 선택 및 설치여부를 확인시켜야 함. 또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함.¹⁰⁵⁾

※ 201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 (99.9%)에 가깝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비율이 99.9%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컴퓨터와 태블릿, 스마트폰이며, 그 중 가장 많은 접근 수단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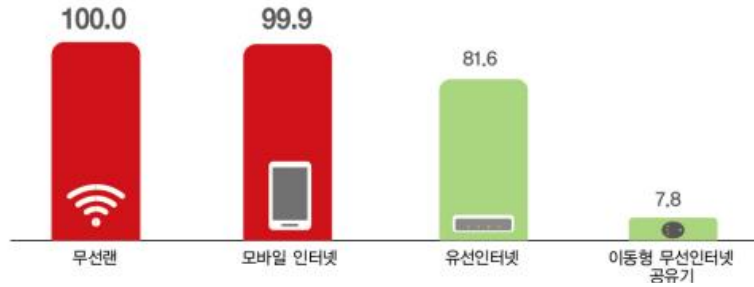
[그림 4-2]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출처: 201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05) 박상호 외 5인(2015),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의무와 이행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공미디어연구소, 제2쪽.

[그림 4-3] 인터넷접속방법



(복수응답, %, 인터넷 접속 가구 기준)

※자료 : 201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표 4-1> 내용선택소프트웨어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비교

구분	내용선택소프트웨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1조①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목적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
설치시기	이용자가 PC에 설치 시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휴대폰 가입계약) 체결시
수단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 차단수단
설치장소	컴퓨터(PC)	휴대폰(스마트기기)
차단대상	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음란정보
설치 의무	의무 아님	의무

○ PC에 대한 청소년보호 프로그램(내용선택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체결 시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내용선택소프트웨어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PC에 설치되면 자율등급표시 또는 제3자등급표시에 의해 설정된 등급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여 자녀들이 성인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 줌

- 정보통신망법상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이 자녀의 PC에 임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청소년이 휴대폰 가입 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에도 PC제조사에 대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설치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PC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제거하고 PC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장려.

<표 4-2>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한 개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제41조의2(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① 컴퓨터를 제조·생산·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해당 컴퓨터에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급제 실시

- (현황) 현재 등급제는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지 법상 의무화된 것은 아님. 정보통신망법은 등급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 보호법은 제8조에서 등급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적인 규정임.

- 따라서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해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유통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다만, 모든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인터넷상 모든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등급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해서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급심사의 대상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로 제한하고 있음

<표 4-3> 청소년보호법상 등급 구분

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급제 실시 의무자)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콘텐츠 또는 사이트에 대한 등급제를 할 의무를 부여

- (등급제의 내용) 등급제의 내용은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표하는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거나 자율적 등급표시가 어려운 경우 심의기관에 등급표시를 의뢰함으로써 등급을 표시하여야 함

<표 4-4> 등급표시에 관한 개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제41조의3(등급표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려는 자체 제작 콘텐츠 또는 관리·운영하는 게시판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콘텐츠 또는 게시판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p>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려는 자 또는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콘텐츠 또는 게시판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콘텐츠 또는 게시판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등급표시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등급표시를 요청하거나 자체 판단한 등급표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게시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 지체 없이 콘텐츠를 유통한 자에게 등급표시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에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p>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의6.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등급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나. 자율규제 및 민관협력 강화 방안 도출 검토

-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이나 필터링 등과 같이 사업자의 적극적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 혹은 민관 협

력 강화 방안 도출

1) 신고포상제의 운영

○ 필요성

-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을 억제하고 있음

- SNS와 같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렇게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고사유

<표 4-5> 신고포상제에서 신고 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3.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4.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
|---------------------------------------------------------------------------------------------------------------------------------------------------------------------------------------------------------------------------------------------------------------------------|

- 비공개 대화방등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미비,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

○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의 액수에 대해 청소년정보보호법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음(청소년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경우 신고포상금은 청소년정보보호법의 예에 따라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신고포상제 사례

- 청소년보호법상 신고포상제

<표 4-6> 청소년보호법상 신고포상제

<p>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p>

- 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포상제

<표 4-7> 청소년성보호법상 신고포상제

<p>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려는 신고포상제는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 반해, 청소년성보호법상 포상금 제도는 피신고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4-8> 신고포상제 비교

구분	정보통신망법상 신고포상제	청소년성보호법상 포상금 제도
신고 대상	위법행위 : 행정법상 위법한 행위	범죄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포상금 지급 조건	위법행위임이 판정되는 경우	피신고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주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포상금 지급액	1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동통신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3사의 위탁을 받아 이동통신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4-4] 이동통신불공정행위 신고처리 절차

처리절차

-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으로 발생일(개통일)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 이용자의 피해구제, 보상 등은 처리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안내)
- ※ 신고센터에서는 위반 유통점에 대한 자율제재(시정 및 경고, 거래중지 등)가 가능합니다.
- ※ 조사 및 법적인 제재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 온라인 페이지 신고 시, 시작표시줄의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캡처본을 첨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사은품 გადა지급 신고 시, '사은품 목록' 캡처본, '네이버 최저가 검색내용'과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 처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절차



○ 신고포상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상 이미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신고포상제의 도입 목적이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다음에 신고포상제 근거 규정이 위치하는 것이 적절함

<표 4-9> 정보통신망법령상 신고포상제 근거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p>제41조의4 (신고포상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p>제23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41조의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된 행위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처분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41조의4에 따른 신고 대상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p>인정되는 경우</p> <p>3. 위법행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p>
<신설>	<p>제2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4(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제2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해당 위법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신설>	<p>제23조의5(포상금의 환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23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종합대응방안 발굴

-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각종 입법이 추진되고,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 세계로 피해 확산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지의무 도입 검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비공개 대화방 등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불법행위의 엄단을 경고·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이러한 경고문구와 유사한 사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있음

<표 4-10>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p>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p>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의2제1호의 쉼표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捲煙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p>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p>

<p>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p> <p>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p> <p>가. 나프틸아민</p> <p>나. 니켈</p> <p>다. 벤젠</p> <p>라. 비닐 크롤라이드</p> <p>마. 비소</p> <p>바. 카드뮴</p> <p>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p> <p>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p>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 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p>

	<p>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은 담배 <p>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및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은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궤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p>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발암성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표기방법 및 시행유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p>

	<p>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스티커(붙임 딱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p>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배(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④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p> <p>⑤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비공개 대화방 등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불법행위의 엄단을 경고·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4에 신설

<표 4-1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경고 문구 법적 근거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제42조의5 (온라인 성착취 경고 문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동영상 제작·유통 시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경고 문구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등 불법행위의 엄단에 관한 내용 2.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물 등이 제작·배포 등의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에 관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긴급 지원 절차 도입 검토) 아동·청소년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체계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특히 아동·청소년이 비공개 대화방 등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는 진행상황의 경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긴급 지원을 하거나 긴급 도움 버튼 등 구제장치를 두거나, 나아가 대화 내용에 대하여 증거채취 절차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다만, 긴급 지원 절차가 대화자의 개인정보 및 사적 비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함

<표 4-12> 긴급지원절차 법적 근거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p>제42조의6 (긴급 지원 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공개 대화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긴급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지원 절차가 대화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긴급지원체계 2. 긴급도움버튼 등 구제장치 3.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채취 절차 도입 4. 그 밖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긴급지원체계

제 2 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방안

가. 서언

○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 및 채팅앱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도, 유인하는 등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난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이미 2020년 6월 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한 바 있음(2020.12.10. 시행 예정). 이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의 지정(제44조의9), 투명성 보고서의 제출의무(제64조의5) 및 그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제76조)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를 한층 강화하였음

○ 이러한 취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제22조의5), 유통방지조치 등 미이행 등에 관한 과징금 부과(제22조의6) 및 제22조의5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제95조의2) 등이 주요 내용임

나.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관련 과태료 규정의 개선 사항

○ 허위 또는 부실의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신설

- (문제의 소재) 본조를 실효성있게 하는 제재방법으로는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음(제76조제3항). 그런데 위 과태료 요건인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위사실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누락된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해석상 분명하지 아니함. 제3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료 제출후 허위사실 확인한 경우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견해의 대립)

· <갑설>은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호의 사항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것은 법을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나 불충분한 자료가 포함된 제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견해이고,

· <을설>은 위 과태료의 구성요건의 핵심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그 내용의 부실, 보고사항의 누락, 허위사실 포함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포함된다고 하면 국민에게 권리의 제한을 주는 침익적 제재규정의 성격상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등의 법치행정원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생각건대 과태료의 제재규정은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삼가야 한다는 점에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소결) 그렇다면 위와 같이 허위 또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재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실효성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 과태료 규정과 별도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제3항 소정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적 조치인 과태료 신설

- (문제의 소재) 제3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소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 4-1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 또는 제64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이 누락된 보고서를 제출한 자 26. 제6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설>	

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 개선 사항

○ 현행 규정

- 현행 규정은 2018. 12. 24. 신설된 것인데, 그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규정의 문제점

- 이 규정은 채팅앱 등에서의 피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동 조문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무엇인지, 노력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입법목적은 달성하기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채팅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의 유인이나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다만 법적 의무의 구체화시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지 아니면 고시 등의 하위법령으로 정하게 할 것인지, 둘째 대상이 되는 채팅앱등을 이용자 기준 14세미만의 아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개정 사항

- (청소년 대상으로 변경) 대상 아동을 만 14세미만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조문 명칭도 개정함

- (의무 내용의 구체화) 의무의 내용을 경고문구의 기재, 신고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 (과징금 신설)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위반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위법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과징금을 도입하고자 함

<표 4-14>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제69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8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웹사이트, 게시판 등 설치, 운영의 금지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으로 웹사이트, 게시판 등 설치, 운영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방조죄가 아닌 독립된 범죄로 규율하기 위함

- 체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금지행위와 제재규정으로 구성함

※ 이러한 금지행위를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로 나열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금지를 독자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이 별도의 금지규정 신설로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제22조의5)와의 비교

- 위 조문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신고,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적의 웹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접적인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1안>

- 금지행위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하고, 그 위반시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임

- 동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된 경우에는 형벌

· 형벌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주범죄에 유사한 정도의 법정형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설치 또는 운영한 것이므로 적어도 제11조 제4항의 알선행위 정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형벌 규정의 위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벌칙 규정의 체계를 보면 제7장에서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제70조(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제70조 제1항이 제70조의2 또는 제71조보다 법정형이 높지 않음에도 앞 조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제2항의 법정형을 포함한 동일한 범죄라는 점도 감안되었지만 순수한 행정형벌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형법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할 것임.¹⁰⁶⁾ 따라서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을 고려하면 제7장 벌칙 중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함. 삭제된 제69조의2를 활용하여 그 위치를 제7장에 두는 것이 적절함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 <2안>

- 금지행위의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그 위반시에는 사업자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표 4-15>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안>	
<신설>	제42조의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금지) 누구든지 「아동·

106) 황창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규제체계에 대한 일고찰”,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2019), 15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 이용할 목적으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설치, 운영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10장 벌칙 제70조의3(벌칙)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설치, 운영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안>	
<신설>	제42조의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 이용할 목적으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설치, 운영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69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입법례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763)

<표 4-16>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신 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p>① ~ ⑦ (생략)</p> <p>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하거나 운영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제 3 2 조 (양 벌 규 정)</p> <p>-----제14조제3항</p> <p>-----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p> <p>제59조(포상금) ①</p> <p>-----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p> <p>② (현행과 같음)</p>
-------------------------------------------------------------------------------------------------------------------------------------------------------------------------------------------------------------------------------------------------------------------------------------------------------------------------------------------------------------------------------------------------------------------------------------------------------------------------------------------------------------------------------------------------------------------------------	--------------------------------------------------------------------------------------------------------------------------------------------------------------------------------------------------------------------------------

마. 온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 문제의 소재

- 온라인상 수사의 어려움이나 전문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이용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수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 현황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 특별사법경찰이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이는 일반경찰에 대응한 개념으로 설명됨. 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위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7호, 제6조 제24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은 실정임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은 정보통신망법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3호, 제6조 제20호)

- 따라서 현행법상 온라인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어느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고 할 것임

- 즉,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정책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통상은 당해 분야의 소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온라인상 아동·청소년보호의 소관 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지금 논의가 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 등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법률의 소관 부처별로 분장하는 원칙에 의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적절하다고 할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온라인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일부 행정형벌(제7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74조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 물론 이 경우 위 행정형벌의 입건수를 고려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음. 나아가 기술한 제42조의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금지)를 신설하고 그 위반시의 형벌(제

69조의2)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형벌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결언

- 우선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소관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상 청소년보호 관련 벌칙 및 신설되는 제69조의2를 직무범위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표 4-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 <u>청소년보호업무</u> 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p>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p> <p>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p> <p>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p> <p>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p> <p>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p>	<p>20.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p> <p>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p> <p>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p> <p>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p> <p>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및 <u>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u></p>
<p>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p>	<p>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p>

2.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가. 서언

○ 제2의 박사방·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 유통하려는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함

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가중처벌

○ 현행 규정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범죄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 등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가중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등의 처리를 벌하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 또는 14세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음(제71조제4의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개정 내용

-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단순히 수집하는 경우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유통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함

- 문제는 이 개정 내용을 어느 법률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이 핵심사항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표 4-1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70조의2(벌칙) 다음 각 호를 제작할 목적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제 3 절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인터넷개인방송 내에서 아동·청소년이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거나 성적으로 활용되거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인터넷개인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거나 방송에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밝히도록 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1.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가. 개요

○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거나 성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보호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

- 지침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일반원칙), 제5조(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제6조(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 제작과정), 제7조(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의무) 등 7개조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학부모정보감시단(인터넷상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활동을 위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

- 해당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사업자(다이아TV, 트레저헌터, 샌드박스 네트워크, MCN협회 등), 플랫폼 사업자(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됨

나. 지침의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표 4-19>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 기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 (콘텐츠 제작과정)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 - 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의 의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기능 또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주의·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도록 권고

- 유튜브, 아프리카TV, 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노력하기로 함

2. 지침의 입법화 가능성

가. 개요

○ 프랑스에서는 2020년 10월 30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공포됨

○ 주요내용

- (부모에 의한 노동착취 규제) 이 법은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이 대체로 규제 영역 밖에 있고 부모에 의하여 쉽게 착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의도됨

- (정부 사전 승인) 이 법에 따르면, 부모들은 그 아동이 노무로 인한 대가를 받는 온라인 활동에 관여하기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아동의 권리 및 인터넷 상에서 아동의 이미지가 공개되는 것에 따른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됨

- (잊힐 권리) 노동법적 접근 외에도 이 법은 아동에게 명시적으로 잊힐 권리를 규정함. 비디오 플랫폼은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동 자신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그 아동의 비디오를 제거할 것이 요구됨

○ 프랑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6월30일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의 입법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정부승인을 받도록 하는 점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충돌되고, 우리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음.

- 잊힐 권리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어 일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나. 입법화 가능성

1) 아동·청소년 출연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수익 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거나 성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는 사전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출연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출연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사전에 출연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의무와 출연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한 출연계약서 및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불법행위로부터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예방수단이 될 수 있음.

<표 4-20> 아동·청소년 출연 관련 계약체결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개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제41조의5(아동·청소년 출연 관련 계약체결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 동영상 제작의 취지와 성격, 수익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아동·청소년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독자적으로 출연료 등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계약서의 내용,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출연료 등 대가의 청구

○ 근로계약법 제68조는 임금청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립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인터넷개인방송 등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아동·청소년의 출연료를 대신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대가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표 4-21> 출연료 등 대가청구에 관한 개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제41조의5((아동·청소년 출연 관련 계약체결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독자적으로 출연료 등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휴식 보장 등

○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이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방송의 특성상 밤샘 촬영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촬영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최소한 휴식이나 수면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장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유사한 휴식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아동·청소년이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입법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2.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4.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
|---------------------------------------------------------------------------------------------------------------------------------------------------------------------------------------------------------------------------------------------------------------------------------------------------------------------------------------------------------------------------------|

<표 4-22> 금지행위에 관한 개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설>	제41조의6(휴게시간 보장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동영상에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2.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4.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	---------------------------------------------------------------------------------------------------------------------------------------------------------------------------------------------------------------------------------------------------------------------------------------------------------------------------------------------------------------------------------

○ (추가적인 금지행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아동·청소년이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노출되거나 성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함

1.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아동·청소년이 가학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아동·청소년에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과도한 신체노출을 요구하지 말 것
4.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요구하지 말 것
5. 아동·청소년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지 말 것

4)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5조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이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 등에 이미 유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입법화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함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5조(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2.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3.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4.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소지 또는 흡입 등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5.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6.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7.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8.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9.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10.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11.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12.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상생활이나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1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 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 심의 기준

-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2 장 심 의 기 준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외국의 국가·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신설 2014.1.9>
- 4.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1.9>
 -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1.9>
 -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중전 제8조제1호자목은 제8조제3호차목으로 이동 <2014.1.9>]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개정 2014.1.9>
 -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 바. 과도한 육설 등 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1.9>
 -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쁨을 해하는 내용
 -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1.9>
 -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14.1.9>
 -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1.9>
 -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1.9>
 - 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제9조(광고·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광고·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 4 절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주홍글씨'처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필요

나. 해외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주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입법을 통하여 18세 미만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잊힐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캘리포니아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s for California Minors in the Digital World)을 규정함(Cal. Bus. & Prof. Code §§ 22580-81).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됨. 기타 온라인 서비스의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서 다양한 온라인 상의 서비스 유형이 포괄적으로 포섭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웹사이트, 앱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에 제공한 일정한 콘텐츠를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도록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함

- 구체적으로 온라인서비스에게 요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보면 (1) 미성년자인 등록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미성년자에 의하여 게재된 콘텐츠나 정보의 제거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2) 미성년자인 등록이용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하고, (3) 미성년자에게 그들의 콘텐츠나 정보의 제거를 요청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4) 해당 미성년자에게 그들의 콘텐츠나 정보의 제거가 완전하거나 포

괄적이지 않음을 고지해야 함

-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즉, (1) 연방법이나 주법이 그 정보를 보유할 것을 규정한 경우, (2) 그 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보관 또는 게시된 경우, (3) 온라인 서비스가 그 콘텐츠나 정보를 익명화한 경우, (4)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정보의 삭제의 요구나 삭제를 위한 적절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미성년자가 콘텐츠 제공에 대하여 보상 또는 기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잊힐 권리가 제한됨

- 추가적인 예외적 상황으로서 온라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 의하여 제공된 콘텐츠나 정보가 다른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에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이거나 제3자가 해당 온라인 서비스가 제거한 콘텐츠나 정보를 복제하거나 재게재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 서비스는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봄

2)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음.¹⁰⁷⁾ 즉, 2020년 10월 30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공포됨

- 이 법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인 아동의 활동에 관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아동 인플루언서의 노동이 대체로 규제 영역 밖에 있고 부모에 의하여 쉽게 착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의도됨

- 이 법은 2021년 4월 20일 시행 예정이며, 아동 인플루언서는 아동 모델이나 아동 여가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프랑스 노동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부모들은 그 아동이 노무로 인한 대가를 받는 온라인 활동에 관여하기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아동의 권리 및 인터넷 상에서 아동의 이미지가 공개되는 것에 따른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됨

107) Law No. 2020-1266 dated 19 October 2020. 이 법은 2020년 6월 25일 상원에 의해 채택되었고, 2020년 10월 6일 국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노동법적 접근 외에도 이 법은 아동에게 명시적으로 잊힐 권리를 규정함. 비디오 플랫폼은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동 자신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그 아동의 비디오를 제거할 것이 요구됨

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도입 방안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피해자가 되거나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 사업자에게 잊힐 권리(삭제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의9에 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과거보다 신장되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의 각종 활동으로 평생동안 낙인찍히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잊힐 권리의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실질적으로 확대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잊힐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이러한 체계는 앞서 제시한 온라인 지원 체계 및 긴급 지원 절차가 구축된다면 그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명확한 지원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집행을 실질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함

○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성년이 된 이후 1년 내에 자신이 게재한 콘텐츠나 자신에 관한 의 삭제 혹은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제한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영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필요함

<표 4-23> 청소년의 삭제 요구 등에 관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2조의7(청소년의 삭제 요구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인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정보통신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성년이 된 후 1년 내에 삭제를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년자가 된 이용자에게 삭제에 필요한 기간 및 조치 방법을 알리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년자가 된 이용자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정보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 2. 제3자가 게재 혹은 유통한 정보인 경우 3. 해당 정보가 이용자와의 적법한 계약에 따라 게재 혹은 유통된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2.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온라인 유통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와 온라인 성착취·성폭력 등 범죄행위로부터 가해자가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게 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온라인 유통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물질적·정신적으로 입은 실손해를 넘어서 3배 혹은 5배 등 일정한 배수 배상을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아동·청소년이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 같이 형사제재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실제 피해를 입은 청소년·아동의 실질적 구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정신적 손해가 주된 손해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판사가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2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2조의8(손해배상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이익을 한도로 한다)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의 기간·횟수 등

	6.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의 재산상태 7.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가 청소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

3.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해 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다각적 검토

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 현행 제44조의8을 구체적인 의무부과로 개정하고, 동 의무위반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표 4-25>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u>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u></u>
<신설>	제69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 8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웹사이트, 게시판 등 설치, 운영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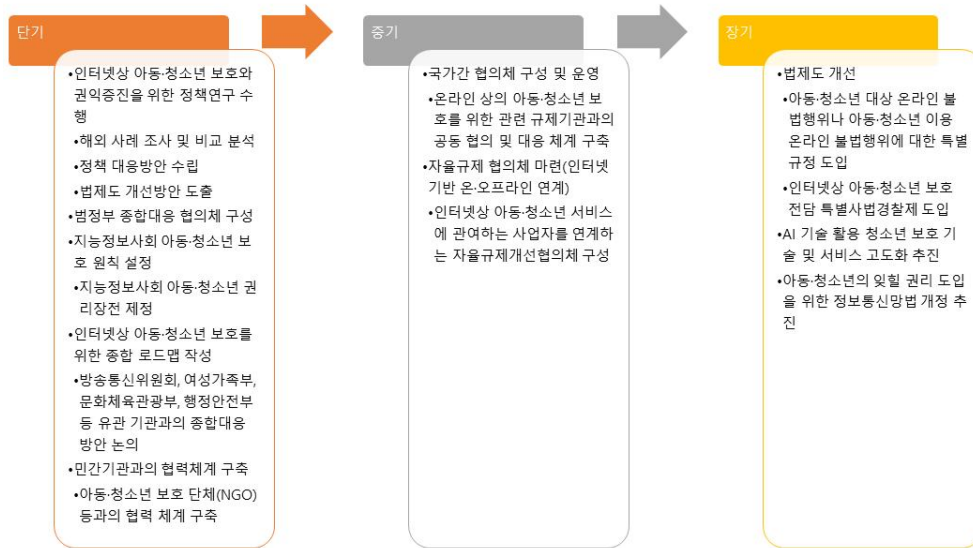
○ 기술한 바와 같이 <2안>을 채택하면 의무의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설정하고, 동 제공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임

<표 4-26>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2조의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 이용할 목적으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설치, 운영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69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절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도출 및 타 기관 협조 요청 사항

1. 중장기 로드맵 도출



<표 4-27>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 보호 로드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정책 대응방안 수립 -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법정부 종합대응 협의체 구성 •지능정보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원칙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정보사회 아동·청소년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 로드맵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의 종합대응 방안 논의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NGO)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	-----------------------------------------------------------------------------------------------------------------------------------------------------------------------------------------------------------------------------------------------------------------------------------------------------------------------------------------------------------------------------------------------------------------------------------------------------------------------------------------------------------------------------------------------------------------------------------------------------------------------------------------------------------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기관과의 공동 협의 및 대응 체계 구축 ●자율규제 협의체 마련(인터넷 기반 온·오프라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서비스에 관여하는 사업자를 연계하는 자율규제개선협의체 구성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행위나 아동·청소년 이용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 도입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AI 기술 활용 청소년 보호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2. 타 기관 협조 또는 요청 사항

가.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협조 또는 요청 사항

○ 온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현재 청소년보호법 범죄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어 있을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범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함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에 개정 요청 사항임

<표 4-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p>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p> <p>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p>	<p>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p> <p>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p>
<p>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p> <p>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p>	<p>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p> <p>20.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p>
<p>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p>	<p>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p>

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가중처벌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개정 요청 사항임

<표 4-2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0조의2(벌칙) 다음 각 호를 제작할 목적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 5 장 결론

인터넷 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율규제 민관 협력방안, 고지의무 도입,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개선, 유통방지 책임자의 직위 의무화, 대화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아동보호 개선, 온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등의 가중처벌, 인터넷개인방송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아동·청소년 출연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청소년의 잊힐 권리 명문화, 아동·청소년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2020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온라인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다.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에 있던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침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법률에 상향 입법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대한 중요한 사항 설명 의무, 서면계약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휴식권 보장, 아동·청소년이 출연료 등 대가의 직접 청구권 인정 등은 상향 입법화를 하는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및 성착취물 배포·유포 등의 경우 불법행위 또는 형사처벌 등 엄단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경고 문구 등을 게재하는 것도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검토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제64조의5) 관련 과태료 규

정을 보면 허위 또는 부실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자료제출한 경우에는 현대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써 과태료 신설이 필요하고,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 개선 사항으로는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의무 내용의 구체화, 그에 따라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목적의 웹사이트, 게시판 등 설치, 운영의 금지 신설하였고, 온라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검토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유통 목적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성폭력을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일부 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의 타 기관 소관 법률로 개정 요청 또는 업무 협조사항에 해당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은영·김혜정·황태정 (20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구차순·김현옥 (2019),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과 지속배경에 대한 질적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71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미선·박성수(2019), 『청소년의 음란물접촉과 예방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9권 제1호 통권 제21호, 한국중독범죄학회.
- 김서연·오정수 (2017), 『남자 중·고등학생의 불법 스포츠도박 실태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3호, 한국체육과학회
- 김유향 (2016),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2018),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 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남기연·권오석 (2017), 『미성년 연예인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통권 제50호
- 민영성·강수경 (2018), 『독일의 인터넷 비밀수사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31-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상호 외 5인 (2015),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의무와 이행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공미디어연구소
- 박광선 (2016),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경찰학연구 제16권 제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 박석철 (2009),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아동(청소년)방송 출연과 미디어 윤리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 박찬걸 (2017),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2017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07),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매뉴얼 시리즈_6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윤덕경 (2020),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KWDI Brief 제5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혜옥, 홍민지, 『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 피해자학연구 2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이두황·정연보·이상원 (2018),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수정 (2019),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 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윤정 (2020),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 ,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제37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 (2017),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최원석·이혁기 (2019), 『불법스포츠투박에 내재된 비합리적 도박신념 경험과 도박중독, 일탈행동, 학교생활 간의 인과모형-청소년을 대상으로-』 ,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여성가족부 여성인권 결과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미국 상원, 어린이 인터넷 설계 안전(KIDS)법안 상정(2020. 3. 5.)』 , 인터넷 법제동향 제150호

해외 문헌

European Commission(2020), EU Strategy for a More Effective Fight Against Child

Sexual Abuse, COM(2020) 607 final

平成十一年法律第五十二号,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
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第一条

● 저 자 소 개 ●

최 경 진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
- 현 가천대학교 교수

황 창 근

- 연세대 법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과 석사
- 연세대 법학과 박사
- 현 홍익대학교 교수

정 경 오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현 법무법인 린 구성원 변호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0-17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증진 방안 연구

2020년 월 일 인쇄

2020년 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